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성과 측정(SVI) '탁월' 기업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25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19시

장소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교육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성과 측정(SVI) '탁월' 기업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25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19시

장소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교육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25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19시
장소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교육장

- 식 순 -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선임

4. 안건상정

- 제1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의 건
-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배당금 지급의 건
- 제4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제5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임원 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5. 폐회 선언

6. 기념촬영

인사말

존경하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대의원, 임직원 여러분,

먼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저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력 덕분에 우리 협동조합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입니다.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폭염, 기후 불균형,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와 취약한 지역사회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협동조합은 선두에 서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우리 발전소 45개, 24년 외부발전소 33개 시공 등을 통해 총 14,720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함으로써 우리 조합원 1인당 약 8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엔 총 8,67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환원하였고 특히 저개발국가인 네팔과 캄보디아에 태양광발전소를 국제연대사업으로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에서 99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 협동조합이 품질경영과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걸쳐 대의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우리 조합의 활동과 비전을 나누었던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공무원 교육, 재생에너지 시민 홍보, 연대활동을 통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저변을 넓혀나간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발전소의 증축과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시화호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여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RE100 실현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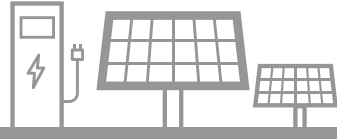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시민RE100 실현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과 함께 조합원님들의 권익향상, 지역사회 발전, 공익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조합원님들과 대의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목 차】



협동조합 정신	05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목적	06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혁	08
2024년 정기총회 회의록	11
제 1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의 건	17
제 2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
제 3호 의안 배당금 지급의 건	76
제 4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78
제 5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80
제 6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82
제 7호 의안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92
정 관	94
규 정	114
대의원명단	131

협동조합 정신

☞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협동조합의 7대 운영원칙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사업 이용과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개방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 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본조달에 있어서 조합원의 공평한 부담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관리
- 공동재산, 출자배당 제한, 잉여의 내부유보, 이용고배당,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 조합원의 정치적 신조 존중, 의견 통일하에 정치적 발언과 행동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 일반대중에 대한 협동조합 정보제공

제6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국내, 국외에서 공통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협동조합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세계화에 대한 협동조합 측의 대응)
-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책임
-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목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와
시민참여에 의한
기후 위기 대응실천을 위해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

- 0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 0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공간 확대**
- 0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공헌**
- 04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모든 시민이 RE100에 참여토록 한다!



1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20,000kWp** 건설하자!

2 **1만명**의 시민을 **조합원**으로 모시자!

3 에너지전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

4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모범적인 기업모델**을 만들자!

조합연혁

연/월	연혁
2024	
12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SVI) 3년 연속 ‘탁월’ 등급 판정
10월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생에너지 유공자 표창
8월	안산시민햇빛56호발전소(괴산공장) 준공
6월	안산시민햇빛50호발전소(안산정수장) 준공
2월	정기총회 개최 및 제5기 이사회 출범, 제4기 대의원 선출
1월	안산시민햇빛씨에스텍발전소 발전소 준공
2023	
12월	지역사회공헌 총 6,500만원 사회 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SVI) ‘탁월’ 등급 판정 안산시민햇빛발전 55호 발전소 준공
8월	2023년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7월	안산시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표창 수상
6월	서수원IC, 월암IC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통한 경기RE100 실현 참여 협동조합 협약 체결
4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안산시와 『배수지 활용 시민참여형』태양광 보급 협약 체결
2월	정기총회 개최
2022	
12월	지역사회공헌 총 5,560만원 사회 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SVI) ‘탁월’ 등급 판정
10월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당까오 지역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자문 사회공헌
9월	안산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후원금 1,000만원 사회 환원
8월	(사)푸른아시아 임농업교육센터 몽골지부 3kW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7월	안산시민햇빛발전 26~32호(안산 공단삼거리 주차장) 발전소 준공
6월	협동조합 기본법 10주년 기념 ‘2022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상
4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 탄소중립 협의회 협약 체결 안산시민햇빛발전 33호~37호, 42호~44호 발전소 준공
2월	정기총회 개최
2021	
12월	지역사회공헌 총 5,330만원 지원
9월	안산시민햇빛발전 26~37호, 42호~44호 발전사업 허가

연/월	연혁
	4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안산시민단체와 태양광 설치 공동 홍보 MOU 체결 안산시 호수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MOU 체결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협약 체결 3월 정기총회 개최 및 제4기 이사회 출범, 제3기 대의원 선출
2020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 25호 발전소 준공 접속반 KS인증, MAS 등록 가능 11월 미니태양광 구조물 직접 생산 8월 안산시민햇빛발전 18호 발전소 준공 3월 정기총회 개최
2019	12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네트워크기반 에너지사업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안산시민햇빛발전 23호, 24호 발전소 준공 11월 필리핀 타워빌 캠프아시아 유치원&클리닉센터 태양광 설치 사회공헌, 안산시민햇빛발전 20호, 20-1호 발전소 준공 9월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8월 취약계층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협약식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덕경기행복마을관리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7월 취약계층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협약식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월 정기총회 개최
2018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 14호, 16호, 17호, 21호 발전소 준공, 제5회 우수사회적경제 어워드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10월 안산시민햇빛발전 15호 발전소 준공 9월 세계 최대 시화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장관상 수상 8월 전기공사업 등록, 안산시민햇빛발전 19호 발전소 준공 5월 환경부 안산시 협약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 사업 추진 3월 경기콥 공공 플랫폼 사업 에너지 분야 선정 2월 정기총회 개최 및 제3기 이사회 출범, 제2기 대의원 선출

연/월	연혁
2017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 3호, 9호, 10호, 11호 발전소 준공
11월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인증
6월	안산시민햇빛발전 5호, 6호, 7호, 12호 발전소 준공
4월	경기도 우수협동조합 선정
3월	안산시 에너지 취약층 “행복나눔봉사단” 후원금 전달, 안산시민햇빛발전 8호 발전소 준공,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3차 선정 (1억 7천만 원 지원)
2016 12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2차 선정(3억8천4백만원 지원)
5월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선정(3억1천5백만원 지원)
3월	정기총회 개최
2015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 발전소 준공식 개최
7월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와스타디움) 발전소 준공
2월	화랑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수익증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정기총회 개최 및 제2기 이사회 출범, 제1기 대의원 선출
1월	안산시 와~스타디움(안산시민햇빛발전 4호 발전소)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4 12월	SJM 노동조합 208명 197,000,000원 출자 약정
10월	SJM 노동조합 사업 설명회 실시
9월	안산시민햇빛발전 호수동 주민2호 발전소 준공
2월	정기총회 개최
2013 10월	안산시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MOU 체결
5월	안산시민햇빛발전 1호 중앙도서관 발전소 준공
2월	정기총회 개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호수동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협의회 MOU 체결
1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인가(1월 11일)
2012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제1기 이사회 출범(2012년 12월 12일)
11월	태양광 설치사업 MOU 및 세부계약 체결 전국시민햇빛발전 추진지역 제1차 간담회
6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6월 27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24년 제12차 정기총회 의사록

- ☐ 회의의 명칭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24년 제12차 정기총회
- ☐ 개최 공고일 : 2024년 2월 13일(화)
- ☐ 개최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9시
- ☐ 개최 장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관 3층 교육원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 ☐ 기 명 날 인 : 송승철, 유용근, 김송미

- 양성습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다.

1. 성원보고

- 의장이 재적대의원 104명 중 총 94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의장이 2024년 제12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2024.02.21. 19:08)

3. 서기 및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서기로 구종훈 사원을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송승철대의원, 유용근대의원, 김송미 대의원을 추천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묻고 전원 동의로 통과시키다.

4.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총회 공고문에 공지된 안건을 설명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제6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고 전원 동의로 통과시키다.

제1호 의안_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_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_ 배당금 지급의 건

제4호 의안_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제5호 의안_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제6호 의안_ 임원선출의 건

제7호 의안_ 2024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_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5.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이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2023년 감사 보고서를 조합내부 감사인 조동근 감사가 참석이 어려워 조항오 본부장이 보고하다.
-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묻고 전원 동의로 통과시키다.

<제1호 의안 2023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2) 제2호 의안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조항오 본부장이 보고하다.
- 김기영 대의원이 총회자료집 23쪽, 조합원 수를 목표대비 실적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하고 조합원수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다. 본부장이 조합원수 현황은 28쪽 그래프에 나타나있음을 설명하며,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 신윤관 대의원이 51쪽, 사회가치측정. 탁월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에 대해 60점이 나온 부분을 언급하며 신경을 써야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본부장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다.
- 조영주 대의원이 25쪽 지역사회공헌 약 6500만원과 63쪽 사회공헌사업 금액 차이에 대해 문의하다. 본부장이 큰 지출만 적은 것이라 답변하다.
- 임병웅 대의원이 판관비 11기(당기)가 10기(전기)에 비해 60%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 이유를 묻다. 본부장이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증가가 큰 이유임을 답변하다.
- 의장이 다른 의견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고 전원동의로 통과시키다.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3) 제3호 의안 : 배당금 지급의 건

- 의장이 배당금 지급의 건을 상정하고 조항오 본부장이 배당금 6%와 5% 지급에 관해 보고하다.
- 임병웅 대의원이 배당금 비율 결정 절차에 대해 질의하다. 본부장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답변하다. 다시 임병웅 대의원이 10%이내에서 자유롭게 배당가능하다면 10%

배당할 수 없는 건지 질의하다. 이에 대해 이창수상임이사가 법정적립금 등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결정한 비율임을 답변하다.

- 김미숙 대의원이 1금융권과 조합의 차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다. 배당률을 10% 가까이 올렸다가 추후 낮추면 많은 조합원 탈퇴가 우려되니 6%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6% 배당한 동이가 89명, 5% 배당한 동이가 3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6% 지급안을 통과시키다.

<제3호 의안 배당금지급의 건 >

참석	6%	5%	기권	의결 결과
94명	89 명	5 명	0 명	통과

4) 제4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의장이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을 상정하고, 본부장이 보고하다.
-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시키다.

<제4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5) 제5호 의안 :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의장이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김기영 대의원이 조합원 탈퇴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본부장이 기존 감좌했던 조합원들의 탈퇴, 연세가 많은 조합원의 경우 사망 또는 자녀가 탈퇴가 있음을 말하다.
-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전원 동의로 통과시키다.

<제5호 의안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7) 제7호 의안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본부장이 보고하다.
- 조영주 대의원이 공장을 산 건지 살 계획인지 묻다. 이에 대해 의장이 작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괴산 방축리에 4300평 공장을 구매했으며, 자체 공장 용도로 운영하며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장의 일부를 임대해 줄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이희경 대의원이 화성공장 옥상에 태양광만 설치하고 공장으로 활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대해 의장이 자체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임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다른 의견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통과시키다.

<제7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8) 제8호 의안 :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 의장이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 통과시키다.

<제8호 의안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참석	동의	부동의	기권	의결 결과
94명	94명	0명	0명	통과

6) 제6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 의장이 임원선출의 건 안건 진행을 위해 의장직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하다.
- 김길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41조 1항에 따라 선출된 날로부터 3년임을 확인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입후보한 이사 및 감사 후보 현황을 보고하고, 입후보한 임원후보자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의 경우 선출정수 16명 중 19명이 후보로 접수하였으므로 이사

선출은 경선으로 진행함을 알리고, 감사의 경우 선출정수 2명 중 2명이 후보로 접수하였으므로 정관 제38조에 1항에 따라 정수 이내이므로 감사 후보 전원에 대해 찬반으로서 선출이 결정됨을 설명하고, 참석 대의원들에게 선출방식을 묻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 대의원 전체의 동의로 감사 후보 전원에 대해 찬반 의사를 거수로써 선출하기로 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의 감사 후보에 대해 조합원 94명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감사 후보 전원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사선출을 위하여 재적대의원 104명 중 94명이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 결과를 선포하여 통과시키다.

* 선출임원

- 1) 이사 : 강한식, 공경빈, 김기영, 김시경, 김영림, 박선미, 박양복, 양성습, 오정숙, 이용진, 이창수, 임주현, 채복자, 최영미, 최현수, 홍지인
- 2) 감사 : 윤중현, 조동근

-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창수 이사가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창수 이사장 후보에 대해 찬반의사를 거수로 해줄 것을 요청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창수 이사장 후보에 대해 참석 조합원 전체가 찬성하였으므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창수 이사장이 당선 포부를 밝히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이창수 이사장에게 총회 진행을 요청하고 이창수 이사장이 의장에 취임하다.

7. 폐회선언

- 의장이 모든 의안에 대해 보고 및 심의, 의결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폐회를 요청하다.

- 전원의 동의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24년 제12차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4.02.21. 21:32)

의 장

양 성 습



이 창 수



선거관리위원장

김 길 순



기명날인인

대 의 원

송 승 철



대 의 원

유 용 근



대 의 원

김 송 미



제1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28조와 제45조에 의거하여 시행한
2024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감 사 보 고 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회 귀중

2025년 02월 03일

내부감사인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조합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내부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내부감사인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의사록 및 질문을 통하여 운영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조합의 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본 내부감사인은 제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의견으로는 별첨된 조합의 재무제표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등을 일반적인 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태양광설치수입 92.4억원 중에 47.9%인 44.2억원이 5월, 8월, 12월에 발생하였고, 태양광설치수입원가 86.1억원의 34.6%에 해당하는 29.8억원이 5월, 8월, 12월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수익·비용이 대응되게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전기대비 매출은 54% 증가한 107.9억원(2023년 70.1억원 2022년 58.2억원)인데, 매출원가는 64.7% 증가한 86.1억원(2023년 52.3억원 2022년 45.5억원)으로 나타나서 매출총이익율은 전기대비 5.2% 감소한 20.2%(2023년 25.4%)입니다.
3. 조합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이 34.2억원(2023년 47.7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장·단기차입금으로 90.3억원(2023년 58.5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대출이자 및 투자자산 수익률을 비교한 적절한 자금관리와 안전자금 등을 고려한 자금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2024년 전기대비 증가한 장·단기차입금 31.8억원으로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39.8억원 추가취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내부감사 조 동 근 (인)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
2024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4년 총괄 평가]

■ 조직사업

- 조합원 현황

년도	조합원 수	출자금	▶	년도	조합원 수	출자금
2023	1,622명	5,994,842,108원		2024	1,794명	7,562,042,108원

: 조합원 수 전년 대비 10.6% (172명) 증가
출자금 전년 대비 26.14% (1,567,200,000원) 증가

-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현황

: 이사회 총 10회, 운영위원회 총 8회 진행하였습니다.

■ 탄소배출 절감

년도	탄소절감량	1인당 절감량	▶	년도	탄소절감량	1인당 절감량
2023	10,493.68tc	6.4톤		2024	14,720.9tc	8.2톤

: 탄소배출 절감량 전년 대비 40.2% (4,227.22tc) 증가
2024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14,720.9tc의 탄소배출을 절감했습니다.
(*자체발전소,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주택지원사업, 외부발전소 설치를 통한 탄소배출절감량)
이는 1,794명의 조합원 기준으로 1인당 8.2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 절감량입니다.

■ 자체발전소 설치사업

발전소명	주소	용량	준공일
안산시민햇빛 씨에스텍 발전소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313	99.6kWp	2024-01-08
안산시민햇빛50호발전소 (안산정수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	300kWp	2024-06-18
안산시민햇빛 56호발전소 (괴산공장)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430-16	1,805kWp	2024-08-21

: 2024년 3개 2,204.6kWp 규모의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총 45개 6,576.74kWp 발전소를
보유하여 연간 6,235,776kWh의 전력 생산을 통해 6,984tc 탄소배출을 절감하였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사업명	총사업비	설치개소	설치용량	탄소배출절감량
주택지원사업	243,423,000원	45개소	135kWp	198.7tc
건물지원사업	423,726,000원	10개소	263.4kWp	387.6tc
합계	667,149,000원	55개소	398.4kWp	586.3tc

2023년에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4년 주택지원사업은 45개소 설치, 건물지원사업은 10개소 설치로 연간 586.3tc 탄소배출을 절감 하였습니다.

■ 태양광 설치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설치개소	설치용량	탄소배출절감량
외부발전소 설치사업	8,146,493,785원	동두천자연에너지 햇빛2호기외 38개소	4,858.8kWp	7150.6tc

: 동두천자연에너지햇빛2호기 외 38개소, 4,858.8kWp 용량을 설치 7150.6tc 탄소배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용전검사 완료 기준)

■ 전기공사업

291,994,400원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진행하였습니다.

■ 전기공사 시공능력

전기공사협회에서 평가한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순위 총 20,374개 대상 업체 중 432위로 전국 상위 2.1% 달성했습니다.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순위/대상업체수	경기지역순위/대상업체수
2024	22,464,108,000~	432 / 20,374	96 / 4,37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 ‘탁월’ 등급 판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사회적 가치 지표(SVI) 측정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 3년 연속 ‘탁월’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혁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연대사업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에너지협동조합, 기후위기안산비상행 동, 안산환경운동연합, 대부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 등

과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함께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여 탄소중립 실현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 지역사회공헌

2024년 약 8,670만원이 지역사회공헌에 쓰였습니다.

안산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800만원, 캄보디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500만원, 관내 지역 아동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약 600만원 등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홍보교육 활동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안산시 공무원과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 대의원 및 조합원 활동

조합원 확대와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조합원 증모 대회와 1700번째 및 1800번째 조합원 가입자 이벤트를 통해 신규 조합원들을 유치하고,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행동학교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실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네 번의 대의원 워크숍을 진행하여, 조합의 비전, 목표 등을 나누며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직원훈련 및 역량강화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및 감리 실무 기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무 노하우 교육 등 우리 조합의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교육 훈련 시간은 21시간 이상입니다. (2024년 법정 의무교육 시간 제외)

■ 조합 전문성 강화

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ISO인증 (9001, 14001, 26000, 4500),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을 인증받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 인증 완료 받을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사업 방향

- 1 연간 2만톤의 탄소를 감축한다
- 2 기후위기에 대해 실천적으로 대응한다
- 3 지역 협동조합간의 연대로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2024년 4대 중점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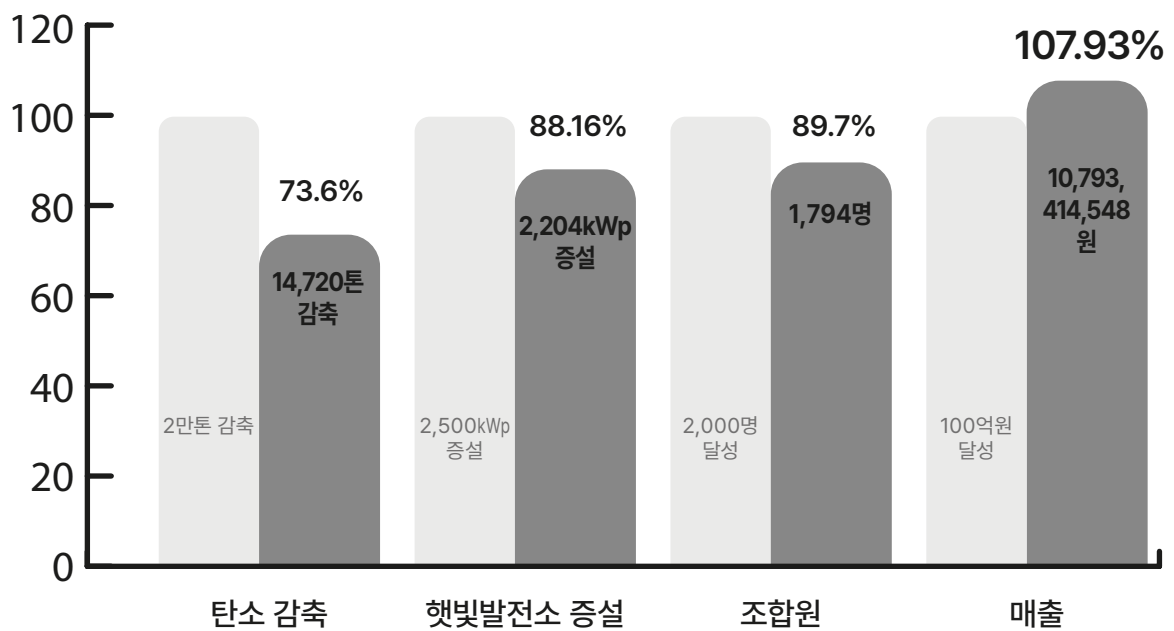
I.
탄소 감축
2만톤 달성

II.
햇빛발전소
2,500kWp 증설

III.
조합원
2,000명 달성

IV.
매출
100억원 달성

2024년 4대 중점목표 대비 실적



- I. 탄소 감축 2만톤 감축 ➡ 14,720톤 감축으로 **73.6%** 달성
- II. 햇빛발전소 2,500kWp 증설 ➡ 2,204kWp 증설로 **88.16%** 달성
- III. 조합원 2,000명 달성 ➡ 조합원 1,794명으로 **89.7%** 달성
- IV. 매출 100억원 달성 ➡ 매출 10,793,414,548원으로 **107.93%** 달성

1 조직사업

□ 조합원 현황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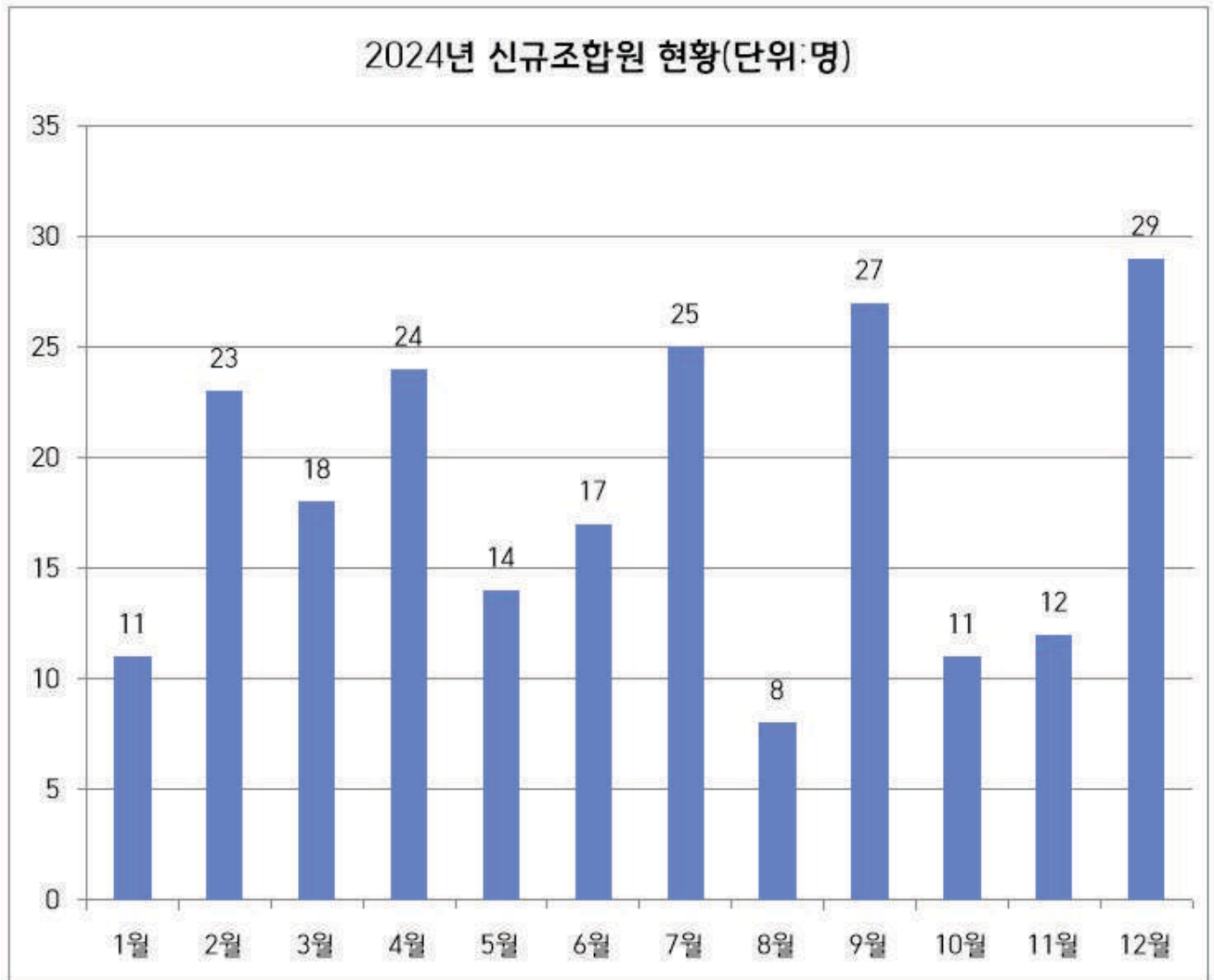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 도시 실현에 기여한다.

□ 추진방향

-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협동조합 조합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전개
-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날’등 행사 기획
- 대의원 대상 워크숍 행사 기획 진행

□ 2024년 신규 조합원 현황

- 2024년 신규 조합원 전년 대비 총 172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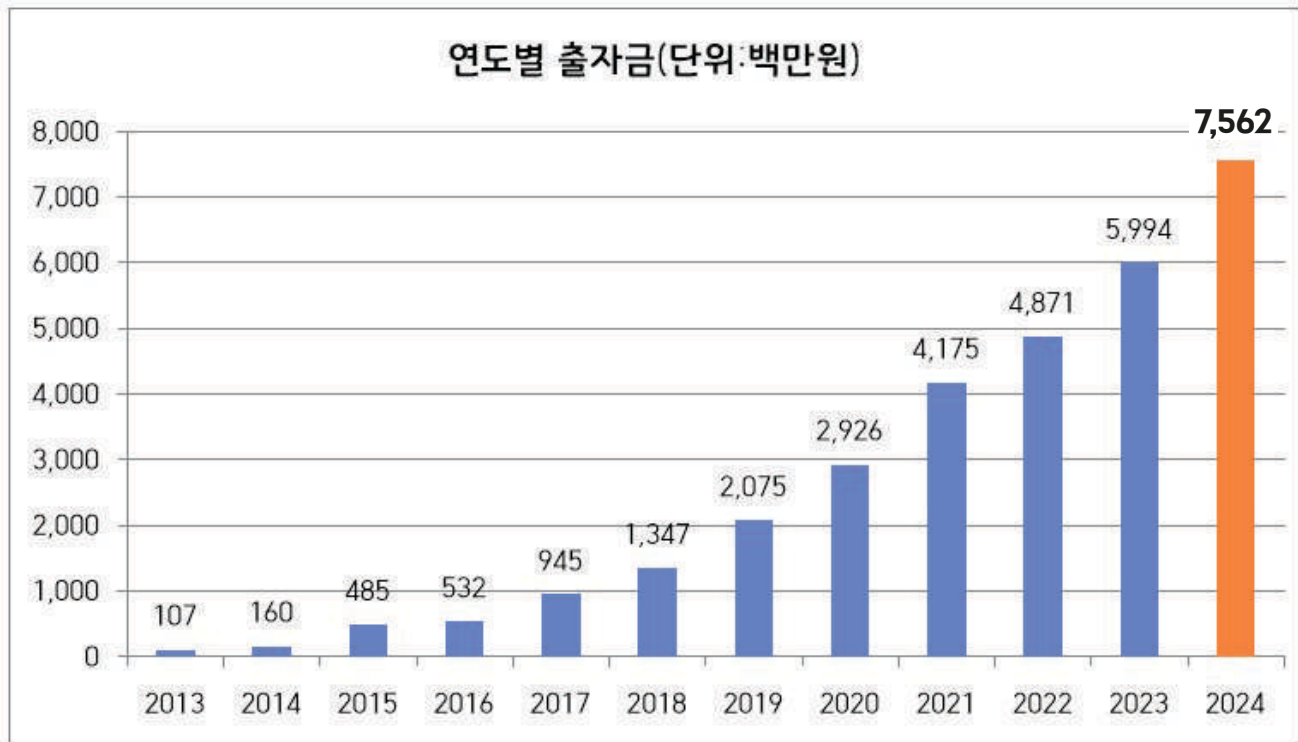


□ 2024년 월별 조합원 가입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명	23명	18명	24명	14명	17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명	8명	27명	11명	12명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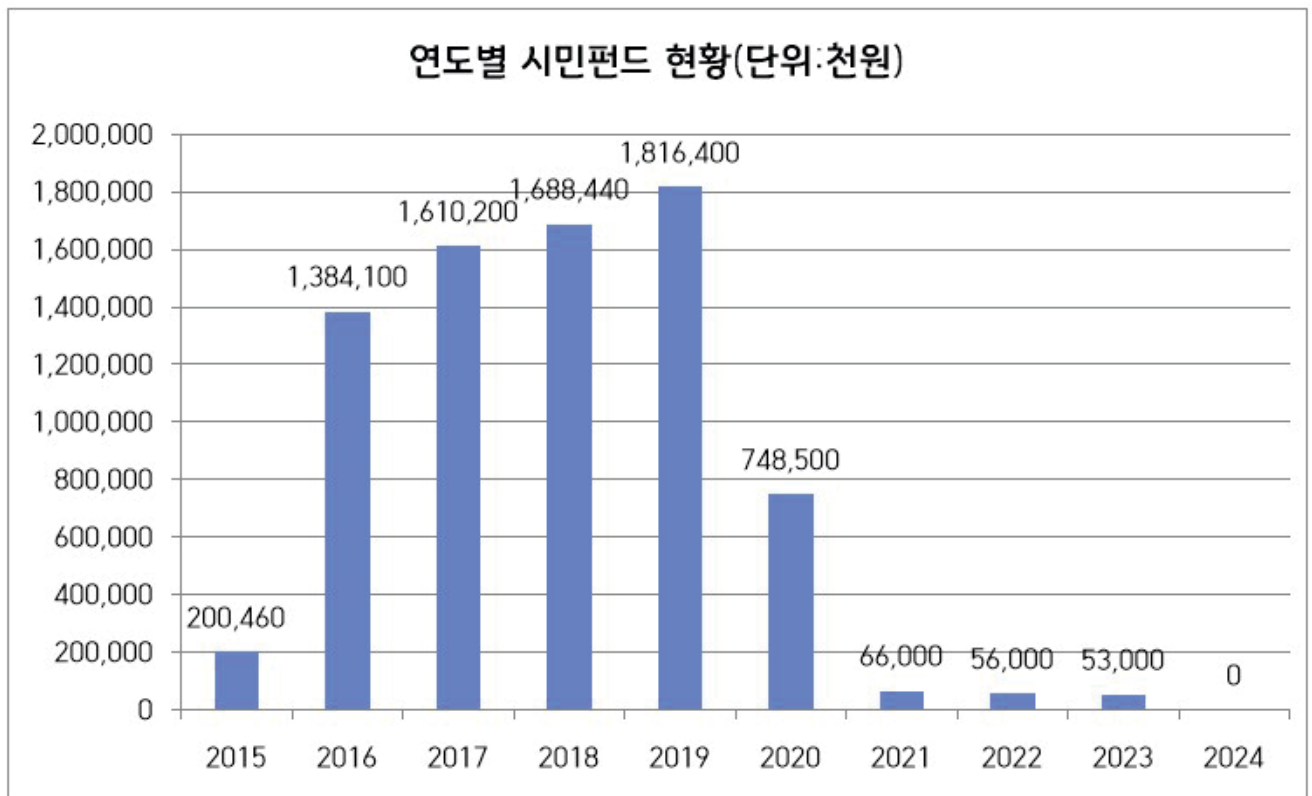
전년 대비 조합원 증가율			
연도	2023년	2024년	증가율
조합원 수	1,622명	1,794명	10.6%

□ 연도별 출자금 현황



년도(년)	이월(원)	증액(원)	반환(원)	잔액(원)
2013	5,100,000	102,019,519	-	107,119,519
2014	107,119,519	71,435,181	18,130,000	160,424,700
2015	160,424,700	357,120,000	32,190,000	485,354,700
2016	485,354,700	105,797,555	58,393,217	532,759,038
2017	532,759,038	512,292,820	99,920,261	945,131,597
2018	945,131,597	557,950,000	155,900,000	1,347,181,597
2019	1,347,181,597	759,900,000	31,383,085	2,075,698,512
2020	2,075,698,512	1,421,738,787	571,208,540	2,926,228,759
2021	2,926,228,759	1,709,370,000	510,260,728	4,125,338,031
2022	4,125,338,031	1,611,100,000	865,195,922	4,871,242,109
2023	4,871,242,108	1,941,371,150	817,771,150	5,994,842,108
2024	5,994,842,108	1,279,100,000	528,600,000	7,562,042,108
누계(원)		10,429,195,012	3,688,952,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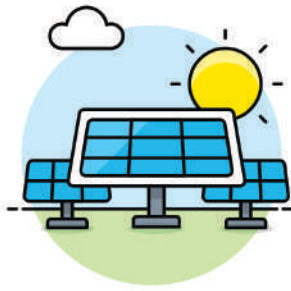
□ 연도별 시민펀드 현황



년도(년)	이월(원)	증액(원)	반환(원)	잔액(원)
2015	-	200,460,000	-	200,460,000
2016	200,460,000	1,332,640,000	149,000,000	1,384,100,000
2017	1,384,100,000	487,040,000	260,940,000	1,610,200,000
2018	1,610,200,000	721,600,000	643,360,000	1,688,440,000
2019	1,688,440,000	402,260,000	274,300,000	1,816,400,000
2020	1,816,400,000	-	1,067,900,000	748,500,000
2021	748,500,000	-	682,500,000	66,000,000
2022	66,000,000	-	10,000,000	56,000,000
2023	56,000,000	-	3,000,000	53,000,000
2024	53,000,000	-	53,000,000	0
누계(원)	-	3,144,000,000	3,144,000,000	0

□ 조합원 활동포인트 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성과측정(SVI) '탁월' 기업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 기후위기에 지금 당장 행동하고 참여합니다.
- 기후위기에 맞서는 비상행동에 참여합니다.
- 조합원이 주인이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합니다.
- 출자배당과 활동포인트에 대한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조합원 활동포인트 지급 원칙

항 목	배 점	비 고
조합원 가입 권유	조합원 가입 권유 시 가입 1인당 10,000 포인트	
조합 회의 참석	이사회 및 운영위 참석 100,000 포인트 대의원 총회 참석 100,000포인트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교육 10,000 포인트 캠페인 및 행사 3,000 포인트 태양광 설치 공사 소개 시 순공급가액의 1%	

- 1 활동포인트는 익월 현금으로 지급
- 2 문의 : 031-483-3428 / ansan_energy@ansansolar.kr
카카오톡플러스 채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3 조합원 탈퇴시 활동포인트는 자동 소멸

□ 연도별 조합원 활동포인트 지급 현황



□ 2024년 조합원 활동포인트 지급 현황

번호	지급내용	지급액(원)	비고
1	조합원 가입 권유	2,350,000	
2	조합원 활동	8,597,070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행동학교 참여 등
3	조합원 태양광 설치 홍보활동	2,345,560	
4	대의원 활동	13,250,000	대의원 정기총회, 워크숍
5	운영위원회	900,000	
6	이사회	10,700,000	
7	선거관리위원회	600,000	
8	사회적성과 평가위원회	50,000	
합계		38,742,630	

□ 참여적 의사결정 위원회 목록

- 이사회(총 16명)
- 운영위원회(총 5명)

□ 목 적

-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조합원의 운영 참여 확대와 조직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활동 결과

- 우리 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외이사, 노동자 인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비율이 이사회 85.7%, 운영위원회 51.6%입니다.

■ 이사회(10회)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노동자 인사	내용
이사회	2월6일(목) 16:00	14명	10명	1명	■ 2023년 감사 보고의 건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승인의 건 ■ 배당금 지급의 건 ■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괴산공장 지점등록의 건
	3월26일(화) 16:00	13명	10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경기남부두레생협 단기 대여 승인의 건
	4월25일(목) 16:00	14명	12명	-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상벌규정 논의의 건
	5월28일(화) 16:00	14명	11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조합 사옥 재경매 추진의 건
	6월25일(화) 11:00	13명	10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운영위원 위촉의 건 ■ 캄보디아 조합원 해외 연수 논의의 건
	7월24일(수) 13:00	11명	9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캄보디아 조합원 해외 연수 논의의 건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노동자 인사	내용
이사회	9월11일(수) 11:00	13명	10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시민펀드 만기 상환의 건
	10월24일(화) 11:00	12명	10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직원 성과금 지급의 건
	11월20일(수) 11:00	10명	8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상벌규정 논의의 건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우선접속 입법 촉구 서명 조직의 건
	12월19일(목) 11:00	12명	9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상벌규정 논의의 건 ■ 정기총회 일정 확정건의 건 ■ 2025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운영위원회(8회)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노동자 인사	내용
운영 위원회	1월30일(화) 11:00	3명	-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2024년 제12차 정기총회 안건의 건 ■ 2023년 감사보고의 건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 배당금 지급의 건 ■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월21일(화) 11:00	3명	1명	-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네팔 학교 후원의 건 ■ 통일걷기대회 재정모금 참여의 건 ■ 한국전력 안산지사와 공동 사회공헌사업 진행의 건
	6월19일(수) 11:00	3명	1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사단법인 울타리 넘어 후원 요청의 건 ■ 민주노총 안산지부 투쟁사업장 기금 후원 요청의 건 ■ 캄보디아 조합원 해외 연수의 논의의 건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노동자 인사	내용
운영 위원회	7월17일(수) 16:00	5명	2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8월21일(수) 17:00	4명	1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10월2일(수) 11:00	4명	1명	1명	■ 상벌규정 논의의 건
	11월6일(수) 11:00	4명	1명	1명	■ 상벌규정 논의의 건 ■ 후원금 지원 요청의 건
	12월17일(화) 11:00	5명	2명	1명	■ 조합원 출자금 감자 요청의 건 ■ 후원금 지원 요청의 건 ■ 상벌규정 논의의 건



2 자체발전소 설치사업

□ 목 적

-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현재 45개 6,576.74kWp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 및 경기도, 민간기업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조합원 확대

□ 추진방향

- 안산시 공공부지 임대로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경기도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2024년 자체발전소 추진 실적

순번	발전소명	설비용량 (kWp)	설치장소	예상발전량 (년/kWh)	준공일
1	안산시민햇빛 씨에스텍 발전소	99.6	씨에스텍 공장 옥상	130,874	2024-01-08
2	안산시민햇빛 50호 발전소	300	안산정수장 옥상	394,200	2024-06-18
3	안산시민햇빛 56호 발전소	1,805	괴산공장 옥상	2,371,770	2024-08-21
2024년 합계		2,204.6kWp	연간 예상 발전량	2,896,844kWh	



□ 자체발전소의 연도별 전력 생산량 및 탄소 절감량



연도	전력생산량(MWh)	탄소절감량(tc)	자체발전소 누적 수
2013년	23	26	1
2014년	49	55	2
2015년	228	256	3
2016년	473	531	3
2017년	1,064	1,194	12
2018년	2,156	2,419	18
2019년	2,978	3,341	22
2020년	3,486	3,911	25
2021년	3,605	4,045	25
2022년	4,975	5,572	41
2023년	5,292	5,927	42
2024년	6,235	6,984	45
누계	30,564	34,261	45

※탄소 절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무연탄 탄소배출 계수 1.12 적용

□ 조합 자체발전소 현황

번호	발전소명	설비용량 (kWp)	장소	준공일
1	안산시민햇빛1호발전소	30.0	중앙도서관 옥상	2013-05-21
2	안산시민햇빛2호발전소	19.8	중앙도서관 옥상	2014-09-30
3	안산시민햇빛3호발전소	199.66	상록수체육관 옥상	2017-12-26
4	안산시민햇빛4호발전소	299.88	와 스타디움 주차장 옥상	2015-06-30
5	안산시민햇빛5호발전소	99.855	재활용선별센터 옥상	2017-03-09
6	안산시민햇빛6호발전소	76.86	올림픽기념관 옥상	2017-04-13
7	안산시민햇빛7호발전소	99.855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옥상	2017-05-08
8	안산시민햇빛8호발전소	99.855	반월배수지	2017-01-23
9	안산시민햇빛9호발전소	99.83	감골시민홀 옥상	2017-12-18
10	안산시민햇빛10호발전소	199.325	와동체육관 옥상	2017-12-13
11	안산시민햇빛11호발전소	50.25	청소년수련관 옥상	2017-11-01
12	안산시민햇빛12호발전소	149.94	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옥상	2017-05-25
13	안산시민햇빛14호발전소	236.5	와동배드민턴장 옥상	2018-12-10
14	안산시민햇빛15호발전소	67.68	차량등록사업소 옥상	2018-10-15
15	안산시민햇빛16호발전소	97.09	반월배수지 옥상	2018-12-04
16	안산시민햇빛17호발전소	98.6	일동배수지 옥상	2018-12-04
17	안산시민햇빛19호발전소	207.36	안산정수장 옥상	2018-08-09
18	안산시민햇빛20호발전소	99.9	안산정수장 옥상	2019-11-22
19	안산시민햇빛20-1호발전소	19.24	안산정수장 옥상	2019-11-22
20	안산시민햇빛21호발전소	70.56	선부다목적체육관 옥상	2018-12-31
21	안산시민햇빛23호발전소	99.9	안산하수처리장 옥상	2019-12-18
22	안산시민햇빛24호발전소	99.9	안산하수처리장 옥상	2019-12-18
23	안산시민햇빛18호발전소	99.9	안산게이트볼장 옥상	2020-08-20
24	안산시민햇빛22호발전소	80.85	점심체육관 옥상	2020-04-22
25	안산시민햇빛25호발전소	99.9	조합화성공장 옥상	2020-12-02

번호	발전소명	설비용량 (kWp)	장소	준공일
26	안산시민햇빛26호발전소	99.84	원시동 공단3주차장	2022-04-28
27	안산시민햇빛27호발전소	99.84		
28	안산시민햇빛28호발전소	99.84		
29	안산시민햇빛29호발전소	62.40		
30	안산시민햇빛30호발전소	99.84	원시동 공단1주차장	2022-07-08
31	안산시민햇빛31호발전소	99.84		
32	안산시민햇빛32호발전소	99.84		
33	안산시민햇빛33호발전소	98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사면	2022-04-11
34	안산시민햇빛34호발전소	99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	
35	안산시민햇빛35호발전소	99		
36	안산시민햇빛36호발전소	99		
37	안산시민햇빛37호발전소	99		
38	안산시민햇빛42호발전소	99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사면	
39	안산시민햇빛43호발전소	99		
40	안산시민햇빛44호발전소	99		
41	안산시민햇빛대부도발전소	98.77	바다향기수목원 주차장	2022-04-01
42	안산시민햇빛55호발전소	19.64	협동조합마을카페 마실 옥상	2023-12-19
43	안산시민햇빛 씨에스텍 발전소	99.6	씨에스텍 공장 옥상	2024-01-08
44	안산시민햇빛50호발전소	300	안산정수장 옥상	2024-06-18
45	안산시민햇빛56호발전소	1,805	괴산공장 옥상	2024-08-21
누계	45개	6,576.74kWp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 목 적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조합의 수익 모델 다양화 기반 마련
- 협동조합간의 연대로 협동조합 수익 창출 기대

□ 진행방향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자격조건 이해 및 대응
 - 준비사항: 모집 절차, 배점 항목 및 기준,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등 파악
 - 배점 항목 준비: 공사면허, 기술 인력 보유, 시공실적, 기업 신용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 시공실적 확인 준공 즉시 발주자 발급처리 협조 진행

[illegible][illegible]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4년 연속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을 진행함.

□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 자가용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및 확대 유도

□ 2024년도 건물지원사업 시공실적

- 10개소 중 8개소 148kWp 완공, 2개소 115.4kWp 공사 진행 중

사업명	총사업비	설치개소	설치용량	탄소배출절감량
건물지원사업	423,726,000원	10개소	263.4kWp	387.6tc

※탄소 절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무연탄 탄소배출 계수 1.12 적용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부지)



복자수도회(옥상)



성 마르코 성당(지붕 및 옥상)



고택성당(지붕)



성가소비녀회(옥상)



현리중앙교회(옥상)

□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 2024년도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

사업명	총사업비	설치개소	설치용량	탄소배출절감량
주택지원사업	243,423,000원	45개소	135kWp	198.7tc

※탄소 절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무연탄 탄소배출 계수 1.12 적용



양평



화성



양평



포천



시흥



포천

4 태양광 설치사업

□ 사업목적

- 화석연료 사용으로 기인하는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 전환으로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유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확대
- 지역에서 생산하고 사용함으로 전력 자립도와 에너지 분권에 기여

□ 추진방향

- 태양광발전소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소개와 컨설팅을 통한 시민 발전사업자 확대
- 누적된 시공 경험과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안전한 시공

□ 시공실적

사업명	총사업비	설치개소	설치용량	탄소배출절감량
외부발전소 설치사업	8,146,493,785원	동두천자연에너지 햇빛2호기의 38개소	4,858.8kWp	7150.6tc

※탄소 절감 규모는 한국에너지공단 무연탄 탄소배출 계수 1.12 적용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포천시종합운동장



인천 인수초등학교



세드나이엔지(공장)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발전소명	발주사	설치용량(kWp)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63-30 태양광설치공사	위즈종합건설(주)	96.25
파주 서래메디컬프라자 태양광 설치공사	(주)대한전설	36.9
경기도민햇빛발전소11호기	경기에너지협동조합	147.46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태양광발전소		99.38
경기도민21호		72.5
경기도민20호		99.375
경기국악원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7호기		299.375
광명시민햇빛6호발전소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0
금천햇빛발전소2호기 세드나 건립공사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52.5
신도림동 공동주택 및 근생 태양광	도시전력	12.5
동두천자연에너지햇빛2호기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89.385
반짝4호,5호기	반짝반짝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96.95
월봉중학교시민햇빛1호기		234.32
세드나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세드나이엔지	57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태양광발전소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99.38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태양광발전소	수원에너지협동조합	99.38
안성시민참여3-5호기발전소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98.98
안성시민참여3-1호기발전소		99.485
안성시민참여3-2호기발전소		99.485
안성시민참여3-3호기발전소		99.485
안성시민참여3-4호기발전소		99.485
관양1동 공영주차장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111.265

발전소명	발주사	설치용량(kWp)
아이쿱 창고 태양광발전소	에스엘텍	94.38
에스엘텍 태양광발전소		582.01
제3호의정부시민햇빛발전소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123.22
경기도일자리재단4호		71.25
인수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86.1
석정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92.25
정일수산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	정일수산	9.92
태진핸드레일 주식회사	태진핸드레일 주식회사	98.01
포천시민햇빛발전소1호기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99.375
포천시민햇빛발전소2호기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99.375
포천시민햇빛발전소3호기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99.375
한국오츠카(주)향남 자가용태양광 발전소	한국오츠카제약향남공장	150
화도자연3호기 태양광발전소 방산 건립공사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202
화성한과 자가용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화성한과	49.995
효자발전소	효자발전소(개인)	72.6
경기국악원RE빛1호	화성시민재생에너지협동조합	190.625
경기국악원 용인 햇빛발전2호기	용인에너지협동조합	237.5
합 계		4,858.825

5 전기공사업

□ 사업개요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진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려면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공고조달 참가 자격 등록 및 갱신 유지관리 필수

□ 사업결과

- 291,994,400원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진행

공사명	총사업비	공사현장	발주처
성남시 수정구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291.994.400원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합계	291,994,400원		



6 전기공사 시공능력

□ 전기공사 시공능력

- 전기공사협회에서 평가한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순위 총 20,374개 대상 업체 중 432위로 전국 상위 2.1% 달성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순위/대상업체수	경기지역순위/대상업체수
2024	22,464,108,000~	432 / 20,374	96 / 4,371

*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 : 매년 7월경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표, 전국의 모든 공사업체에 대해 그해 공사한 실적, 경영상태 등 조건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전기공사 시공능력 확인서

발급번호 : HEC2A52-169076-9195485 (제7호 서식)

등록번호	경기-05396	전화번호	031-483-3428
상 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 표 자	양성승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04-1(월피동, 광덕시장3층)		
등록일자	2018년 09월 04일	실질 자본금	₩ 223,386,240~
연 도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순위/대상업체수	경기지역순위 / 대상업체수
2023 년도	₩ 18,275,984,000~	527 / 19,806	119 / 4,233

※ 시공능력순위는 발급일 현재 순위이며 변경사항 (신규등록, 양도일수, 합병, 폐업 등)이 있을경우 시공능력순위가 변동될수 있음

※ 시공능력유효기간 : 2023. 07. 31 ~ 2024년 시공능력 공시전일까지

○ 용 도(제출처) : 기관 제출용

○ 전기공사협회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귀 협회에서 평가한 시공능력 평가액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31일

신 청 인 상 호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 표 자 : 양성승 {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220.74.124.41E20230731110637 *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전기공사 시공능력 확인서

발급번호 : G8XE7W1-172239-9440323 (제7호 서식)

등록번호	경기-05396	전화번호	031-483-3428
상 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 표 자	이항수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04-1(월피동, 광덕시장3층)		
등록일자	2018년 09월 04일	실질 자본금	₩ 223,386,240~
연 도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순위/대상업체수	경기지역순위 / 대상업체수
2024 년도	₩ 22,464,108,000~	432 / 20,374	96 / 4,371

※ 시공능력순위는 발급일 현재 순위이며 변경사항 (신규등록, 양도일수, 합병, 폐업 등)이 있을경우 시공능력순위가 변동될수 있음

※ 시공능력유효기간 : 2024. 07. 31 ~ 2025년 시공능력 공시전일까지

○ 용 도(제출처) : 기업활동

○ 전기공사협회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귀 협회에서 평가한 시공능력 평가액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1일

신 청 인 상 호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 표 자 : 이항수 {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220.74.124.41E20240731150158 *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2023년 18,275,984,000원에서
2024년 22,464,108,000원으로 22.9% 증가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SVI)

□ 목 적

- “사회성과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조직이 우선적으로 사회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본질적인 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 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

□ 평가방향 및 측정 결과

- ‘사회적 성과 지표(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있음
- 사회적 성과에는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재정성과, 기업혁신 등을 범주로 하여 배점 100점으로 평가함
- 평가 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내외부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 99점으로 탁월 등급 선정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보고서

1. 기업 개요			
기업명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명	이광수
조직유형	인종 사회적기업	설립일	
주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사업자등록번호	134-82-10637
인종(지정)번호	제2017-171호	인종(지정)유형	지역사회공헌형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2. 측정 결과		
측정 지표	배점	점수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	15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10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5
10. 고용성과	10	9
11. 매출성과	10	10
12. 영업성과	5	5
13. 노동생산성	5	5
14. 혁신 노력도	10	10
총점	100	99

평가등급	탁월
------	----

※ 등급기준 : (탁월) 90점 이상, (우수) 75 ~ 90점 미만, (보통) 60 ~ 75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

측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 연대사업

□ 목 적

- 조합 간의 협동,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대를 위해 협력 활동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수준

- 우리 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 7개소와 총 29회 협력하였습니다.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네트워크 (이사회, 대표자회의 등)	8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네트워크 (정기총회, 대표자회의)	2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네트워크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10회
대부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네트워크(이사회 등)	4회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네트워크	2회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 네트워크	2회
경기안산양지지역 자활센터	기후위기에 맞서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1회

□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 우리 조합은 지역사회의 기업(기관) 8개소와 총 24회 협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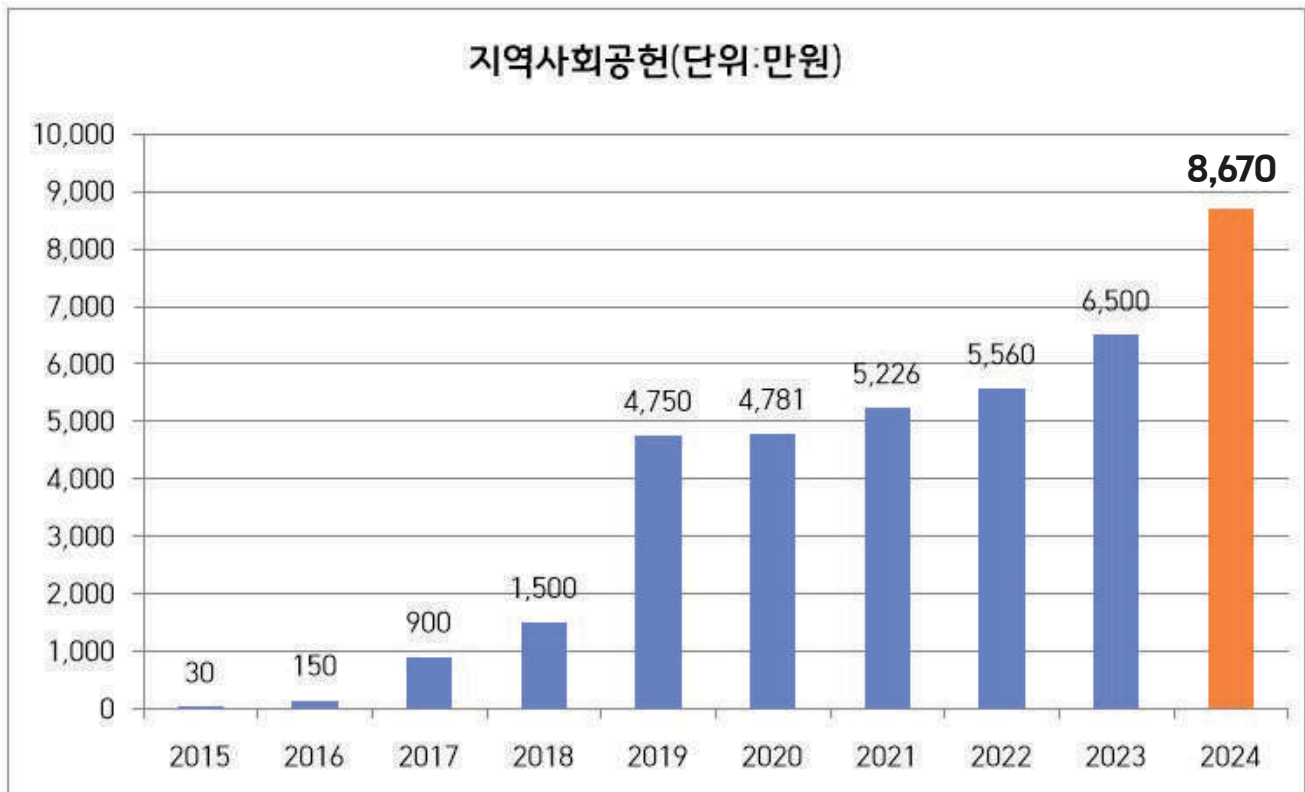
협약기관	협력활동	횟수
양평군	양평군 세월2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1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1회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및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설비 A/S 체계 운영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A/S 전담 업체 지정 협약 체결	3회
(사)안산시민회	기후위기에 맞서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 약 체결	1회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회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ENERGY-DREAM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회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캠페인, 교육 사업 진행 등	15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 친환경 에너지 톡!톡!」 연계 사업 진행	1회



9 사회공헌사업

□ 사회적 환원 노력

- 협동조합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을 조성하여 매년 기부를 진행
- 우리 조합의 2024년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합산 금액은 8,670만원이며,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을 통한 사회공헌은 3건 진행



□ 사회서비스 제공(재능기부)

순번	날짜	내용	사진
1	2024-07-11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운영 사례 및 발전소 견학 기회 제공 (청년광장, 22명 방문)	
2	2024-07-16 ~ 2024-07-17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 사례 및 발전소 견학 (초지고등학교, 40명 방문)	

순번	날짜	내용	사진
3	2024-10-18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군포 시민들을 위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 사례 및 발전소 견학 (군포환경자치시민회, 20명 방문)	

□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재투자

순번	날짜	내용	사진
1	2024-02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100만원 지원)	
2	2024-03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산시민위원 후원 진행 (100만원 지원)	
3	2024-04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이 「2024년 안산 4.16 자전거 대장정」추진계획에 따른 진도 팽목항을 출발하여 안산까지 416km 자전거 대장정 진행 지원 (100만원 지원)	
4	2024-05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부문이 함께 만들어 가는 「2024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지원 (300만원 지원)	
5	2024-05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네팔 세인트존스학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500만원)	
6	2024-05	에너지마켓 수익금을 안산희망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함 (약 179만원)	
7	2024-06	에너지 자립마을과 분리배출 및 수거를 통한 자원순환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울타리 넘어 활동 지원 (100만원 지원)	
8	2024-07	청년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안산시 주요 행사에 지원하여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100만원 지원)	
9	2024-08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캄보디아 현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500만원 지원)	

순번	날짜	내용	사진
10	2024-09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와 협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605만원 지원)	
11	2024-10	‘탄소중립 이웃사랑 나눔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기부 지원 (300만원 물품 지원)	
12	2024-10	시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 친환경 에너지 톡!톡!」 사업 지원 (300만원 지원)	
13	2024-11	본오3동 주민자치회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협업 프로젝트 ‘창작 뮤지컬 샘골이야기’ 지원 (100만원 지원)	
14	2024-11	독거노인,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김장을 전달하는 안산시 통합 김장나눔 축제 행사 지원 (100만원 지원)	
15	2024-11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담근 김장을 전달하는 2024년 김장나눔 행사 지원 (100만원 지원)	
16	2024-1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해고철폐 및 원직 복직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100만원 지원)	
17	2024-11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고려인 동포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너머 활동 지원 (100만원 지원)	
18	2024-12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통해 네팔작은도서관, 유니버셜스타배구단 등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을 위한 단체 활동 지원 (300만원 지원)	

순번	날짜	내용	사진
18	2024-1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화호 유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화호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100만원 지원)	
19	2024-12	안산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500만원 지원)	
20	2024-12	대부도협동조합과 함께 안산시 대부동 내 에너지 취약계층 10가구에 난방비 후원 (300만원 지원)	
21	2024-12	마을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는 일동 청소년 공간 그늘에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위한 지원 (200만원 지원)	
22	2024-12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 지원 (100만원 지원)	

10 2024년 활동

□ 연대활동

순번	날짜	내용	사진
1	2024-05-05	어린이날 실천행동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챌린지 게임 진행	
2	2024-05-09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30%를 목표로 사회 대전환을 위한 100만 도민 행동을 만들어 가고자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 진행	
3	2024-06-01	2024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지구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행사 진행	
4	2024-06-13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국내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5	2024-08-22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과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에너지 전환과 데이터센터를 주제로 기후행동학교 진행	
6	2024-09-07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기후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거리 행진, 캠페인 등 기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로 임직원 및 조합원 참여	
7	2024-11-13 ~ 2024-12-11	찾아가는 기후간담회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의 기후정의 실천 활동들을 이야기하며 협력 활동을 모색 하고자 간담회 진행	

순번	날짜	내용	사진
8	2024-11-25	기후위기와 건강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YWCA에서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기후행동학교 진행	
9	2024-11-27	안산시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안산시 내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및 비전 나눔 간담회 진행	
10	2024-12-06	기후위기와 녹색소비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과 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녹색소비를 주제로 기후행동학교 진행	
11	2024-11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 캠페인 진행	

□ 홍보교육활동



김현 국회의원 간담회



박해철 국회의원 간담회



용혜인 국회의원 간담회



용인시의회 벤치마킹



초지고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①



초지고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②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



충남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



안산시 공무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교육



인천대학교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①



인천대학교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및 교육②



통장협의회 대상
신재생에너지 교육

		
안산환경한마당 부스 홍보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부스 홍보	OBS 오늘의 기후

□ 수상내역

날짜	기관/단체	사업내용	사진
2024-06	안산시	<안산시장 표창 - 최현수 홍보이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안산시장 표창	
2024-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이창수 이사장>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조합원 활동



제12차 정기총회



창립 13주년 행사



제5기 임원 워크숍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증모대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함께 참여주세요!

모집정보

모집기간: 2024.01.01~2024.12.31
 증모방법: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 제출을 통한 가입
 ※ 추천인 기준으로 집계, 추천인 작성 필수
 ※ 조합원 가입 신청 → 출자금 납입 → 가입승인 절차로 진행

1상내용

1등: 50만 활동포인트
 2등: 40만 활동포인트
 3등: 30만 활동포인트
 4등: 20만 활동포인트 ※ 증모 조합원 수 10인 이상부터 1상 집계
 ※ 동률일 경우 누적 활동포인트 순으로 1상
 ※ 활동포인트는 가타소득(배우) 공제 후 지급

문의: 031-483-3428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700번째 조합원 가입자를 찾습니다!

1,700번째 조합원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카페 상품권(1만원 상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증모 활동 포인트(10,000)도 중복 지급♥

영성회 클로도 하객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지기

현재 조합원 수
1,665명

문의: 031-483-3428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800번째 조합원 가입자를 찾습니다!

1,800번째 조합원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카페 상품권(1만원 상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증모 활동 포인트(10,000)도 중복 지급♥

1,800번째 조합원 가입자

문의: 031-483-3428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증모 이벤트



907기후정의행진



2024년 캄보디아 사회공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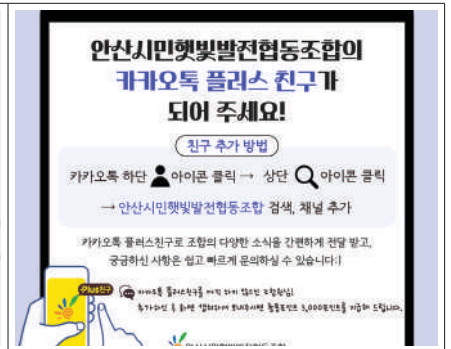
기후행동학교



햇빛 홍보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카카오톡플러스친구추가 이벤트



대의원 워크숍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 언론 및 인터뷰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및 내용	사진
2024-02	오마이뉴스	'지붕'만 빌려줬을 뿐인데 4800만원 수익, 그 비결은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공장 지붕만 빌려줬는데 그 공장은 16년간의 지붕 임대료로 4800만원어치 자가 발전 태양광 시설을 일시불로 받았고, 공장 지붕 방수처리 관리까지 공짜로 받은 것이다. 모두 태양광 발전 덕분이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451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4-05	시민일보	안산시, 공무원 및 시민대상 신재생에너지 교육 진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출처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64819710470	
2024-05	오마이뉴스	시화호에 등장한 '이것'자전거 라이더가 극찬을 보냈다 자전거 도로,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 자전거길 그늘막 태양광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막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설치 완공해 놓고 나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화호 끝ے까지 깔아달라고."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462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4-05	내일신문	안산시, 6월 1일 문화광장서 '환경한마당' 개최 안산시는 오는 6월 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세계 환경의 날 및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2024 안산시민 환경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환경재단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안산희망재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7개 기관·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안산시와 (주)안산도시개발, 르무통이 후원한다. 출처 : https://www.naeil.com/news/read/512216?ref=naver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및 내용	사진
2024-06-06	인천 in	햇빛발전 '답보' 인천... "신재생에너지 이해도 높여야"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고 이듬해 전국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기반의 햇빛(태양광)발전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에 100개 이상의 조합이 활동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조합은 경기도의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이다. 출처 :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05	
2024-08-08	경인매일	안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박람회에 5개 기업 참여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했다. 태양광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출처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660	
2024-09-09	시사매거진	용혜인 당대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첫 세미나 주최 최현수 이사는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로 6,500kW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860만kW를 생산하고 있다”며,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에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96	
2024-11-11	단비뉴스	‘태양광 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기업은 속 탄다 조항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지붕형 태양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연인산을 3~4시간 등산하면 차가 햇빛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그늘막이 되어서, 땀 흘리고 온 후 시원한 차를 탈 수 있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4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및 내용	사진
2024-12	시민일보	대부협동조합·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주거취약계층에 후원금 전달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64976109793	
2024-12	시민일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에 외국인단체 후원금 전달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이창수)으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안산으로 이주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난민여성공동체 ‘다이나믹우먼’ ▲네팔작은도서관 ▲유니버셜스타즈배구단 등 3개 단체에 전달돼 시설 수선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65656964990	
2024-12	경인매일	안산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서 후원금 800만 원 기탁받아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창수)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8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창수 이사장은 “조합원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46	

□ 직원훈련 및 역량강화

-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및 감리 실무 기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무 노하우 교육 등 우리 조합의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교육 훈련 시간은 21시간 이상입니다. (2024년 법정 의무교육 시간 제외)

교육과정	전체 노동자 수	수혜자 수	교육시간	1인당 교육 시간
EXCEL 실무능력 활용	19	3	7	1.11
제07기 온라인 신재생창업스쿨	19	1	6	0.32
제06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무 노하우	19	1	5	0.26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및 감리 실무 기초	19	1	8	0.42
전산회계 1급	19	1	48	2.53
회계입문자를 위한 기초 회계 실무	19	1	7	0.37
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 신입직원 역량 향상 과정	19	2	6	0.63
2024년 경기 지역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실무자 교육	19	2	2	0.21
풍력발전단지 개발 실무(2차)	19	1	14	0.74
결산 및 회계감사 대비 핵심 법인세 체크리스트	19	1	7	0.37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19	1	6	0.32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9	2	6	0.63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교육	19	13	2	1.37
노동법 교육	19	13	2	1.37
ESG와 사회적경제	19	13	2	1.37
사회적가치지표 집합교육	19	2	3	0.32
협동조합의 이해	19	12	2	1.26
신뢰자본의 이해	19	12	2	1.26

교육과정	전체 노동자 수	수혜자 수	교육시간	1인당 교육 시간
ISO인증 교육1	19	13	3	2.05
ISO인증 교육2	19	13	3	2.05
신뢰자본의 활용	19	13	2	1.37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사례	19	13	2	1.37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 시간)				21.7



11

2024년 결산보고

재무상태표

제 1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7,613,098,133		7,224,408,471
(1) 당 좌 자 산		7,137,795,363		6,917,066,032
보 통 예 금		483,173,090		1,371,380,768
기 타 제 예 금		388,627		0
정 기 예 . 적 금		2,936,860,000		3,400,000,000
외 상 매 출 금		3,359,296,124		1,906,688,733
단 기 대 여 금		150,000,000		40,060,490
미 수 금		3,626,038		0
선 급 금		198,885,546		195,340,349
선 급 비 용		5,565,938		3,595,692
(2) 재 고 자 산		475,302,770		307,342,439
원 재 료 (분 양)		95,084,000		197,499,400
미 완 성 (공 사)		380,218,770		109,843,039
Ⅱ. 비 유 동 자 산		12,628,282,791		7,566,231,911
(1) 투 자 자 산		398,792,298		283,704,386
장 기 대 여 금		100,000,000		139,999,996
계 통 출 자 금		298,792,298		143,704,390
(2) 유 형 자 산		11,947,132,593		6,901,911,525
토 지		2,769,758,071		1,034,809,710
건 물	3,069,591,529		827,647,00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6,291,462	2,903,300,067	20,626,486	807,020,517
기 계 장 치	9,145,369,530		7,387,611,90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70,999,482		1,756,886,594	
국 고 보 조금(기계장치)	748,675,777	6,225,694,271	802,865,581	4,827,859,731
차 량 운 반 구	134,538,552		103,668,85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5,289,637		67,650,677	
국 고보조금(차량운반구)	3,989,043	35,259,872	7,266,015	28,752,166
비 품	27,285,681		16,671,69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165,369	13,120,312	9,099,390	7,572,301
건 설 중 인 자 산		0		195,897,10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82,357,900		380,616,000
임 차 보 증 금		20,000,000		20,000,000
기 타 보 증 금		236,828,900		313,205,000
장 기 외 상 매 출 금		25,529,000		47,411,000
자 산 총 계		20,241,380,924		14,790,640,382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424,710,588		2,066,567,721
외 상 매 입 금		8,580,000		5,279,999

재 무 상 태 표

제 1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미 지 급 금		247,424,073		113,706,368
예 수 금		15,368,430		16,367,294
선 수 금		6,100,000		907,868
단 기 차 입 금		1,950,000,000		1,606,170,000
미 지 급 세 금		195,840,808		314,826,048
미 지 급 비 용		0		7,796,507
미 지 급 배 당 금		159,905		168,325
미 지 급 이 용 고배당금		1,237,372		1,345,312
Ⅱ. 비 유 동 부 채		7,251,384,861		4,350,196,434
장 기 차 입 금		7,081,384,861		4,247,196,434
임 대 보 증 금		170,000,000		50,000,000
조 합 원 장 기 차 입 금		0		53,000,000
부 채 총 계		9,676,095,449		6,416,764,155
자 본				
Ⅰ. 자 본 금		7,562,042,108		5,994,842,108
출 자 금		7,562,042,108		5,994,842,108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3,003,243,367		2,379,034,119
협 동 조 합 법 정적립금		322,920,497		241,524,819
임 의 적 립 금		30,000,000		30,000,000
사 업 확 장 적 립 금		1,000,000,000		850,000,000
별 도 적 립 금		166,500,000		166,500,000
공 익 사 업 적 립 금		310,000,000		235,000,00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173,822,870		856,009,30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946,805,754 원			
전기 :	814,847,182 원			
자 본 총 계		10,565,285,475		8,373,876,22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241,380,924		14,790,640,382

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0,793,414,548		7,010,493,428
전력수입	1,195,942,286		1,166,020,881	
태양광설치수입	9,252,527,312		5,627,409,568	
전기공사수입	338,184,950		178,265,011	
A / S 매출	6,760,000		0	
에너지마켓매출	0		38,797,968	
II. 매출원가		8,608,869,641		5,226,541,417
태양광설치수입원가		8,608,869,641		5,206,090,865
상품매출원가		0		20,450,552
기초상품재고액	0		0	
당기상품매입액	0		20,450,552	
기말상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2,184,544,907		1,783,952,011
IV. 판매비와관리비		952,307,991		917,709,532
임원급여	137,777,835		127,762,181	
직원급여	326,734,765		378,324,596	
(전문인력지원)	0		6,500,000	
잡급여	0		3,150,000	
퇴직급여	46,141,536		29,966,970	
복리후생비	62,280,917		61,894,268	
여비교통비	12,204,940		12,764,44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4,917,000		7,467,120	
통신비	1,972,294		2,837,051	
수도광열비	90,000		0	
세금과공과금	1,722,661		10,310,164	
감가상각비	155,680,976		28,810,810	
지급임차료	20,916,676		22,443,949	
수선비	0		297,000	
보험료	34,386,210		69,236,380	
차량유지비	4,665,438		909,337	
운반비	3,500		200,482	
교육훈련비	6,269,180		6,082,727	
도서인쇄비	11,718,318		21,008,500	
회의비	1,105,270		1,658,300	
사무용품비	2,387,830		3,341,407	

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소모품비	690,146		734,330	
지급수수료	61,543,006		79,268,521	
광고선전비	2,171,500		4,112,159	
건물관리비	12,417,663		5,913,230	
잡비	900		116,800	
총회비용	5,639,600		4,621,500	
마케팅비용	0		9,078,118	
조합원활동비	38,869,830		20,217,050	
평창버섯재배사비용	0		11,682,140	
V. 영업이익		1,232,236,916		866,242,479
VI. 영업외수익		276,680,173		393,861,581
이자수익	81,971,992		49,713,664	
배당금수익	2,782,908		2,363,421	
수입임대료	127,487,200		60,272,727	
유형자산처분이익	339,188		0	
컨설팅사업수입	0		28,288,909	
기업후원수익	35,793,604		42,177,555	
관리비수입	6,127,020		0	
버섯판매수익	740,000		406,500	
보조금	12,688,522		206,335,354	
잡수익	8,749,739		4,303,451	
VII. 영업외비용		467,229,178		293,058,199
이자비용	321,096,202		169,416,636	
기부금	34,761,000		0	
사회공헌사업비	86,723,247		74,820,267	
에너지자립사업	0		18,459,336	
유형자산처분손실	5,570,860		0	
연대사업비	17,680,000		28,646,000	
잡손실	1,397,869		1,715,96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041,687,911		967,045,861
IX. 법인세등		94,882,157		152,198,679
법인세등	94,882,157		152,198,679	
X. 당기순이익		946,805,754		814,847,182

공사원가명세서

제12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1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12 (당)기		제11 (전)기	
	금 액		금 액	
I.공 사 원 재 료 비		2,749,681,430		1,659,789,467
기초원재료(분양)재고액	197,499,400		566,331,964	
당기원재료(분양)매입액	2,653,316,030		1,290,956,903	
타 계 정 으 로 대체액	6,050,000		0	
기말원재료(분양)재고액	95,084,000		197,499,400	
II.노 무 비		322,634,631		301,862,411
급 여	279,712,457		273,610,419	
임 금	7,064,202		5,292,000	
퇴 직 급 여	35,857,972		22,959,992	
III.외 주 비		0		0
IV.경 비		5,806,929,311		2,933,049,112
중 기 및 운 반 비	12,489,091		10,607,350	
복 리 후 생 비	7,594,490		9,503,880	
여 비 교 통 비	12,023,592		13,170,123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2,990,210		4,557,310	
통 신 비	9,605,179		9,041,614	
전 력 비	8,050,071		1,191,306	
세 금 과 공 과 금	15,160,370		4,214,270	
감 가 상 각 비	381,274,239		328,962,626	
지 급 임 차 료	84,363,837		51,683,480	
수 선 비	5,187,637		320,000	
보 험 료	43,111,130		33,496,070	
차 량 유 지 비	15,818,260		14,492,001	
교 육 훈 련 비	132,000		280,000	
도 서 인 쇄 비	2,883,000		1,474,490	
사 무 용 품 비	85,000		0	
소 모 품 비	40,551,305		23,360,874	
지 급 수 수 료	870,531,195		212,876,447	
외 주 가 공 비	4,273,303,221		2,196,694,985	
잡 비	98,100		262,980	
소 모 공 구 비	182,500		0	
유 지 관 리 A / S	21,494,884		16,859,306	
V.당 기 총 공 사 비 용		8,879,245,372		4,894,700,990
VI.공 사 손 실 총 당전입		0		0
VII.공 사 손 실 총 당환입		0		0
VIII.기 초 미 완 성 공사액		109,843,039		421,232,914
IX.타 계 정 에 서 대체액		0		0
X.합 계		8,989,088,411		5,315,933,904
X I.기 말 미 완 성 공사액		380,218,770		109,843,039

공사원가명세서

제12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1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 (당)기		제11 (전)기	
	금 액		금 액	
X II.타 계 정 으 로 대 체 액		0		0
X III.당 기 공 사 원 가		8,608,869,641		5,206,090,86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12(당)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제11(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5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4년 03월 31일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173,822,870		856,009,30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7,017,116		41,162,118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946,805,754		814,847,182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0
1.	0		0	
2.	0		0	
합 계		1,173,822,870		856,009,300
II.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0		0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0		0	
5.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0		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628,992,184
1. 이 익 준 비 금	0		81,395,678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322,596,506	
가. 현금배당	0		322,596,506	
나. 주식배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150,000,00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7. 협 동 조 합 법 정 적 립 금	0		0	
8. 8 . 공 익 사 업 적 립 금	0		75,000,000	
9. 임 의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73,822,870		227,017,116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7,613,098,133	111,543,469,547	유 동 자 산	103,930,371,414	
7,137,795,363	99,703,565,706	<당 좌 자 산>	92,565,770,343	
	336,595,600	현 금	336,595,600	
483,173,090	57,621,845,379	보 통 예 금	57,138,672,289	
388,627	200,588,434	기 타 제 예 금	200,199,807	
2,936,860,000	25,036,860,000	정 기 예 . 적 금	22,100,000,000	
3,359,296,124	13,123,922,885	외 상 매 출 금	9,764,626,761	
150,000,000	592,060,490	단 기 대 여 금	442,060,490	
3,626,038	293,548,159	미 수 금	289,922,121	
198,885,546	1,465,294,887	선 급 금	1,266,409,341	
5,565,938	6,764,502	선 급 비 용	1,198,564	
	980,703,080	부 가 세 대 급 금	980,703,080	
	45,382,290	선 납 세 금	45,382,290	
475,302,770	11,839,903,841	<예 고 자 산>	11,364,601,071	
95,084,000	2,850,815,430	원 재 료 (분 양)	2,755,731,430	
380,218,770	8,989,088,411	미 완 성 (공 사)	8,608,869,641	
15,827,693,561	18,360,895,460	비 유 동 자 산	5,732,612,669	3,199,410,770
398,792,298	443,792,294	<투 자 자 산>	44,999,996	
100,000,000	139,999,996	장 기 대 여 금	39,999,996	
298,792,298	303,792,298	계 통 출 자 금	5,000,000	
15,146,543,363	17,300,408,266	<유 형 자 산>	5,353,275,673	3,199,410,770
2,769,758,071	2,785,328,931	토 지	15,570,860	
3,069,591,529	3,069,591,529	건 물		
		감 가 상 각 누계액	166,291,462	166,291,462
9,145,369,530	9,145,369,530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계액	2,170,999,482	2,170,999,482
	54,189,804	국고보조금(기계장치)	802,865,581	748,675,777
134,538,552	136,638,552	차 량 운 반 구	2,100,000	
	1,939,188	감 가 상 각 누계액	97,228,825	95,289,637
	3,276,972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7,266,015	3,989,043
27,285,681	27,285,681	비 품		
		감 가 상 각 누계액	14,165,369	14,165,369
	2,076,788,079	건 설 중 인 자 산	2,076,788,079	
282,357,900	616,694,900	<이 타 비 유 동 자산>	334,337,000	
20,000,000	20,000,000	임 차 보 증 금		
236,828,900	549,283,900	기 타 보 증 금	312,455,000	
25,529,000	47,411,000	장 기 외 상 매 출금	21,882,000	
	13,123,076,897	유 동 부 채	15,547,787,485	2,424,710,588
	3,634,777,882	외 상 매 입 금	3,643,357,882	8,580,000

합계 잔액 시산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6,703,563,724	미 지 급 금	6,950,987,797	247,424,073
	143,018,047	예 수 금	158,386,477	15,368,430
	1,093,278,011	부 가 세 예 수 금	1,093,278,011	
	696,809,727	선 수 금	702,909,727	6,100,000
	106,170,000	단 기 차 입 금	2,056,170,000	1,950,000,000
	454,534,980	미 지 급 세 금	650,375,788	195,840,808
	7,796,507	미 지 급 비 용	7,796,507	
	283,020,079	미 지 급 배 당 금	283,179,984	159,905
	107,940	미지급이용고배당금	1,345,312	1,237,372
	369,021,573	비 유 동 부 채	7,620,406,434	7,251,384,861
	316,021,573	장 기 차 입 금	7,397,406,434	7,081,384,861
		임 대 보 증 금	170,000,000	170,000,000
	53,000,000	조 합 원장기차입금	53,000,000	
	545,250,000	자 본 금	8,107,292,108	7,562,042,108
	545,250,000	출 자 금	8,107,292,108	7,562,042,108
	2,029,832,170	이 익 잉 여 금	5,033,075,537	3,003,243,367
		협동조합법정적립금	322,920,497	322,920,497
		임 의 적 립 금	30,000,000	30,000,000
		사 업 확 장 적립금	1,000,000,000	1,000,000,000
		별 도 적 립 금	166,500,000	166,500,000
		공 익 사 업 적립금	310,000,000	310,000,000
	856,009,300	이 월 이 익 잉여금	2,029,832,170	1,173,822,870
	1,173,822,870	미 처 분이익잉여금	1,173,822,870	
	11,070,094,721	손 익	11,070,094,721	
	11,070,094,721	손 익	11,070,094,721	
	10,793,414,548	매 출	10,793,414,548	
	1,195,942,286	전 력 수 입	1,195,942,286	
	9,238,514,585	태 양 광 설 치수입	9,252,527,312	14,012,727
	352,197,677	전 기 공 사 수 입	338,184,950	-14,012,727
	6,760,000	A / S 매 출	6,760,000	
	8,608,869,641	매 출 원 가	8,608,869,641	
	8,608,869,641	태양광설치수입원가	8,608,869,641	
	8,936,539,788	전 력 수 입 원 가	8,936,539,788	
	2,749,681,430	<매 료 비>	2,749,681,430	
	2,749,681,430	원 재 료 비	2,749,681,430	
	322,634,631	<노 무 비>	322,634,631	
	279,712,457	급 여	279,712,457	
	7,064,202	임 금	7,064,202	
	35,857,972	퇴 직 급 여	35,857,972	

합계잔액시산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5,864,223,727	<전 력 경 비>	5,864,223,727	
	12,489,091	중 기 및 운 반 비	12,489,091	
	7,616,590	복 리 후 생 비	7,616,590	
	12,173,092	여 비 교 통 비	12,173,092	
	2,990,21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2,990,210	
	9,605,179	통 신 비	9,605,179	
	7,567,897	전 력 비	7,567,897	
	15,160,370	세 금 과 공 과 금	15,160,370	
	438,741,015	감 가 상 각 비	438,741,015	
	84,363,837	지 급 임 차 료	84,363,837	
	5,187,637	수 선 비	5,187,637	
	43,111,130	보 험 료	43,111,130	
	15,921,474	차 량 유 지 비	15,921,474	
	132,000	교 육 훈 련 비	132,000	
	2,883,000	도 서 인 쇄 비	2,883,000	
	85,000	사 무 용 품 비	85,000	
	40,551,305	소 모 품 비	40,551,305	
	870,531,195	지 급 수 수 료	870,531,195	
	4,273,303,221	외 주 가 공 비	4,273,303,221	
	98,100	잡 비	98,100	
	182,500	소 모 공 구 비	182,500	
	21,529,884	유 지 관 리 A / S	21,529,884	
	954,027,991	판 매 관 리 비	954,027,991	
	137,777,835	임 원 급 여	137,777,835	
	326,734,765	직 원 급 여	326,734,765	
	46,141,536	퇴 직 급 여	46,141,536	
	62,280,917	복 리 후 생 비	62,280,917	
	13,704,940	여 비 교 통 비	13,704,940	
	4,917,00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4,917,000	
	1,972,294	통 신 비	1,972,294	
	90,000	수 도 광 열 비	90,000	
	1,722,661	세 금 과 공 과 금	1,722,661	
	155,680,976	감 가 상 각 비	155,680,976	
	20,916,676	지 급 임 차 료	20,916,676	
	34,386,210	보 험 료	34,386,210	
	4,665,438	차 량 유 지 비	4,665,438	
	3,500	운 반 비	3,500	
	6,269,180	교 육 훈 련 비	6,269,180	
	11,718,318	도 서 인 쇄 비	11,718,318	

합계 잔액 시산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1,105,270	회 의 비	1,105,270	
	2,387,830	사 무 용 품 비	2,387,830	
	690,146	소 모 품 비	690,146	
	61,763,006	지 급 수 수 료	61,763,006	
	2,171,500	광 고 선 전 비	2,171,500	
	12,417,663	건 물 관 리 비	12,417,663	
	900	잡 비	900	
	5,639,600	총 회 비 용	5,639,600	
	38,869,830	조 합 원 활 동 비	38,869,830	
	277,304,559	영 업 외 수 익	277,304,559	
	81,990,879	이 자 수 익	81,990,879	
	2,782,908	배 당 금 수 익	2,782,908	
	127,487,200	수 입 임 대 료	127,487,200	
	339,188	유 형 자산처분이익	339,188	
	35,793,604	기 업 후 원 수 익	35,793,604	
	6,127,020	관 리 비 수 입	6,127,020	
	740,000	버 섯 판 매 수 익	740,000	
	13,200,000	보 조 금	13,200,000	
	8,843,760	잡 수 익	8,843,760	
	468,492,158	영 업 외 비 용	468,492,158	
	321,096,202	이 자 비 용	321,096,202	
	34,761,000	기 부 금	34,761,000	
	87,986,227	사 회 공 헌 사업비	87,986,227	
	5,570,860	유 형 자산처분손실	5,570,860	
	17,680,000	연 대 사 업 비	17,680,000	
	1,397,869	잡 손 실	1,397,869	
	94,882,157	법 인 세 등	94,882,157	
	94,882,157	법 인 세 등	94,882,157	
23,440,791,694	187,175,171,210	합 계	187,175,171,210	23,440,791,694

제3호 의안

배당금 지급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28조와 제56조에 의거하여
2024년 배당에 관한 안을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이익잉여금

항 목	금 액(원)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	227,017,116
2024년 당기순이익	946,805,754
합 계	1,173,822,870

☐ 예상 배당액(안)

① 5% 배당안

2024년	금액(원)
배당예상액 5%	327,634,420

② 6% 배당안

2024년	금액(원)
배당예상액 6%	393,161,322

제4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28조와 제56조에 의거하여
2024년 이익잉여금 처분 안을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이익잉여금 처분(안)]

□ 이익잉여금 총액 : 1,173,822,870원

- 처분(안)

① 6% 배당안

항 목	금 액(원)
법정적립금	94,680,575
배 당 금	393,161,322
공익사업적립금	100,000,000
사업확장적립금	150,000,000
총 계	737,841,897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435,980,973

② 5% 배당안

항 목	금 액(원)
법정적립금	94,680,575
배 당 금	327,634,420
공익사업적립금	100,000,000
사업확장적립금	150,000,000
총 계	672,314,995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501,507,875

제5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 승인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14조와 제28조에 의거하여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2024년 출자금 반환 청구자

윤*영 외 27명

출자금 32,000,000원 환급 요청

제6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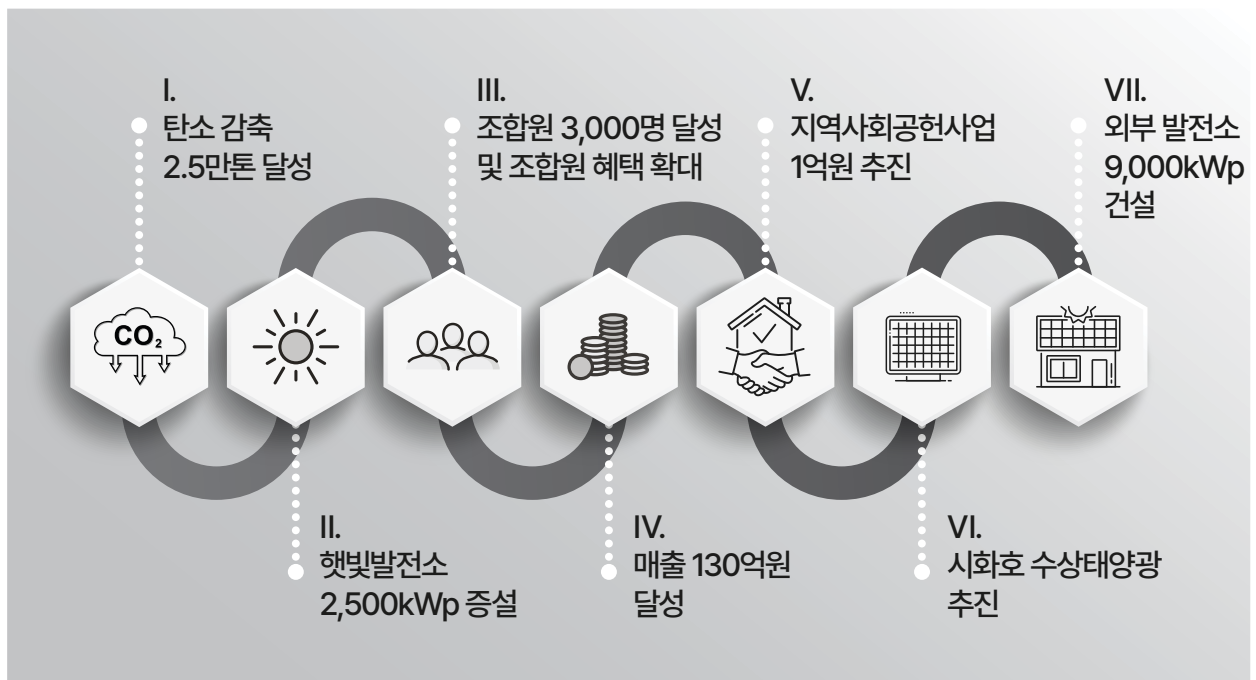
정관 제28조와 제51조에 의거하여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5년 사업계획(안)

2025년 사업 방향

- 1 연간 2.5만톤의 탄소를 감축한다.
- 2 기후위기에 대해 실천적으로 대응한다.
- 3 지역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4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한다.
- 5 조합원의 참여 공간 및 혜택을 확대한다.

2025년 중점목표



2025년 분야별 사업계획(안)

I 탄소 감축 2.5만톤 달성

자체발전소의 연도별 전력 생산량 및 탄소절감량



항목	2023년 설치용량(kWp)	2023년 탄소 절감량(tc)	2024년 설치용량(kWp)	2024년 탄소 절감량(tc)
미니태양광	36	52.98	-	-
주택지원사업	99	145.6	135	198.7
건물지원사업	929.7	1,368.2	263.4	387.6
외부발전소 설치사업	1,972	2903.5	4,858.8	7150.6
자체 발전소	4,372.14	5,927	6,576.74	6,984
합계	7,408.84	10,397.28	11,833.94	14,720.9

: 2024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1인당 8.2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 절감

2025년 연간 탄소배출 총 2.5만톤, 조합원(3,000명 기준) 1인당 8.3톤 절감 목표

II 햇빛발전소 2,500kWp 증설

□ 목적

-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현재 45개 6,576.74kWp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 및 경기도, 민간기업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조합원 확대

□ 추진방향

- 안산시 공공부지 임대로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경기도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운영
- 태양광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소개와 컨설팅을 통한 시민 발전사업자 확대
- 마을발전소 및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소 확대 RE100 추진

III 조합원 3,000명 달성

□ 목적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 위기,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조합원이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과 실천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 도시 실현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는 협동조합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전개
-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날', 대의원 워크숍 등 행사 기획
- 조합원 혜택 확대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여 신규 조합원 유치
- 주민주도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을 통한 신규 조합원 유치

□ 세부방안

1. 조합원 증모 대회

- 기간 : 연중
- 내용 : 기존 조합원을 통한 신규 조합원 유치
- 방법 : 조합원 증모 대회 운영하여 우수 조합원에게는 시상금 지급

2. 조합 홍보 활성화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 네트워크와 SNS 홍보를 통한 조합원 확대 활동 전개
- 방법
 - 사회적경제 한마당, 환경의 날 등 안산시 행사 참여를 통한 조합 홍보
 - 유튜브, OBS 오늘의 기후, 블로그,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매개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 조합원모집 홍보 배너 및 카다로그 비치 확대
 - 온라인 소식지 월 1회 배포하여 조합 소식 주기적으로 전달
 - 햇빛 홍보단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노출 확대 유도 (홍보전담 교육 활용 증대)
 - 타 협동조합 조합원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하여 조합원 가입 유도

3. 조합원 활동 및 혜택 확대

○ 조합원의 날 ‘재생에너지 투어’

- 기간 : 연 3회
- 내용 : 재생에너지 선진사례 탐방, 조합의 주요 사업 및 현황 공유, 조합원들 간 교류 및 관계 형성의 자리 마련

○ 대의원 워크숍

- 기간 : 연 1회
- 내용 : 조합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이슈 공유, 대의원 역할과 활동 안내를 통한 제4기 대의원들 간 교류 및 관계 형성의 자리 마련

○ 조합원 혜택 확대

- 기간 : 연중
- 내용 : 조합원 혜택을 확대하여 소속감 형성 및 탈퇴 최소화, 조합원 확대 유도

- 방법

- 조합원 가입 시 출자증서 및 활동포인트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장기 조합원(10년) 선물 발송
- 해외사회공헌사업 참여 시 조합원 경비 50% 지원
- 조합원 추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소개, 기후정의행진 참여 등 조합원 활동 시 활동포인트 지급

IV 매출 130억원 달성

□ 2025년 영업 목표

	사업명	목표
1	외부발전소 건설	9,000kW (약 110억)
2	건물지원사업	100kW (약 1억 4천)
3	주택지원사업	60kW (3kW, 20건) (약 1억 1천)
4	전기공사	약 1억 5천
5	전력수입	약 16억

V 지역사회공헌사업 1억원 추진

□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시민단체 등에 기부 및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불평등 해소,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
- 시민들에게 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 증진
- 청소년 후원을 통한 햇빛 세대 발굴
- 국제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VI 시화호수상태양광 추진

□ 목적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주도형 수상태양광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경기도와 협력을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시화호 수상태양광 공론화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수상태양광 추진 발판 마련

VII 연대사업

①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대사업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제도개선 및 정책 제언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발전소 건설 시 에너지 정책자금 지원 마련
- 전국에 시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앙 정부의 법, 제도개선 활동
- 재생에너지 관심 있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참여로 탄소중립 실천 운동 전개
- 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추진단 경기도 RE100 추진단 등 지자체와 연대하여 체계 구축

② 안산시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환경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 안산시협동조합협의회/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연대활동
- 지역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행사, 간담회, 교육 등)
-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공동사무국 참여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운동

③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및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교류 협력 사업

-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협력 사업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동사업

2025년 예산(안)

□ 2025년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25년 예산
현금이월	3,420,422
조합원출자증가	1,000,000
차입금(은행대출)	1,800,000
-	
수입합계	6,220,422
차입금상환(은행대출)	381,000
태양광설치자금	2,600,000
자가공장구입자금	2,700,000
현금운영자금	539,422
지출합계	6,220,422

□ 2025년 수입·지출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1. 매출액	10,793,415	13,000,000
전력 수입	1,195,942	1,600,000
태양광 설치 수입	9,238,515	11,250,000
전기공사수입	358,958	150,000
2. 영업외수익	276,680	359,940
이자수익	81,972	82,000
배당금수익	2,783	2,800
수입임대료	127,487	251,800
유형자산처분이익	339	0
기업후원수익	35,794	0
관리비수입	6,127	18,000
버섯판매수익	740	0
보조금	12,689	5,100
잡수익	8,750	240
3.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9,560,978	11,349,160
원재료비	2,479,306	3,200,000
중기맞운반비	12,489	15,000
복리후생비	42,540	50,000
여비교통비	24,229	28,00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7,907	10,000
통신비	11,577	14,000
전력비	8,050	24,000
세금과공과금	16,883	22,200
지급임차료	105,281	110,000
수선비	5,188	6,000
보험료	53,948	64,000
차량유지비	20,487	24,000
교육훈련비	6,401	10,000
도서인쇄비	14,601	16,000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사무용품비	2,473	3,000
소모품비	41,241	48,000
잡비	99	100
소모공구비	183	300
유지관리A/S	21,495	25,000
감가상각비	536,955	640,000
지급수수료	932,074	1,100,000
외주가공비	4,273,303	4,850,000
노무비(급여)	751,289	800,000
퇴직급여	82,000	85,000
4대 보험		
- 건강보험	27,335	38,000
- 국민연금	19,406	21,500
- 고용산재	4,144	15,000
수도광열비	90	60
회의비	1,105	5,000
건물관리비	12,418	15,000
광고선전비	1,972	20,000
총회비용	5,640	20,000
조합원 활동비	38,870	70,000
4. 영업외비용	467,429	487,680
이자비용	321,096	370,000
기부금	34,961	0
사회공헌사업비	86,723	1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571	0
연대사업비	17,680	17,680
잡손실	1,398	0
5. 법인세차감 전이익	1,041,688	1,523,100

제7호 의안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의/결/주/문/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임원보선에 관한
이사회 위임의 건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2. 12. 12.
개정 2014. 02. 18.
개정 2015. 06. 16.
개정 2018. 02. 21.
개정 2018. 07. 05.
개정 2019. 02. 20.
개정 2021. 03. 23.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협동경제, 생명공생, 생태순환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안산시 관내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NS, 문자,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한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한다.
- ② 제1항의 광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 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 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탈퇴]

-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3조[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최종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해당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3조 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⑥ 상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6조【출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납, 분할납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1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바에 따라 그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1 【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 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1조【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 총회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 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제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정한다.

제26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총회는 제2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0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0조-1【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 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2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

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사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34조【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1【운영위원회】

-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제1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 35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7조-2【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8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임원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5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고문과 자문위원】

- ①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할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49조【사업의 종류】

-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햇빛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2. 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 비롯한 수익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4.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중교육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0.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1. 전기공사업.
 12.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13. 건축물전기설비 공사업
 14. 건축물전원설비 공사업
 15. 가공 대전설비 공사업
 16.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
 17.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
 18. 수배전 설비 공사업
 19.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
 2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21.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22. 금속조립구조제 개발업

23. 금속조립구조제 도소매업
24. 금속조립 구조제 수,출입업
25.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26.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업
27.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도.소매업
28.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수출업
29.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30. LED 조명기구 제조업
31. LED 조명기구 도 소매업
32. LED 조명기구 개발업
33. LED 조명기 수출입업
34. 태양광 발전 장치등 제조업
35. 태양광발전 장치등 도소매업
36. 태양광발전 장치등 수출입업
37.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
38. 태양광 접속 분전반 수출입업
39. 태양광 접속 분전반 제조업
40.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
41. 태양광 전지 구조물 도소매업
42. 태양광 전지 구조물 수출입업
43.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
44.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45.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관련사업
46. 통신공사업
47. 전기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 도소매업
48.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
49.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업
50.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 사업
51. 신재생에너지 사업
5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53.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업
54. 건설업
55.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대여사업

- 56. 환경관련사업 컨설팅
- 57. 부동산임대업
- 58. 나물재배, 버섯재배 등 농업

제50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 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하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상·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9.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2조【회계연도등】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4조【운영의 공개】

-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중요 사항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5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5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 ① 조합은 제55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18조 및 제19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 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55조에 따른 보전과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 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57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등】

-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 분할 해산

제60조【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1조【해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다.

제6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규정

조합원 출자금 한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조합원 출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출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출자금 한도】

- ① 개인조합원의 출자금 한도는 1억으로 한다.
- ② 법인 및 단체 조합원의 출자금 한도는 5억으로 한다.

제4조 【출자금 승인 및 감액】

- ① 출자금 1억원 초과 법인 및 단체의 조합 출자 및 감액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 ② 1억 이하 출자금 감액은 주택 구입, 대출 상환, 가족경조사(자녀결혼 등), 긴급 생활비, 경영 악화 등 긴급상황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기타 출자금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금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년11월22일)

잉여금 배당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6조 2항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 【배당액의 결정기준】

-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배당계산자료】

-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 【출자배당금산출방법】

-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월 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월 좌당 배당 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 【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산출한다.
-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 【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 ①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 끝난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조합원의 배당금 신청을 아니할 시 60일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로 해당 조합원에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년1월18일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 6항, 제24조 4항, 제39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또는 대의원과 그 정수
2. 입후보자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조 【선거운동의 제한】 정관 제23조에 따른다

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 ⑥ 위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기수 임원이 당선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위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⑦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제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②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 1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 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 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3일동안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조 【임원후보의 자격】 임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정관 제40조에 따른다

제 10조 【임원 및 대의원 후보의 등록과 추천】

- ①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임원후보자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제출한다.〈서식 1, 2〉
- ④ 대의원후보자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서식 3〉
- ⑤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 11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중복 추천】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5인 이상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 13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4조 【등록의 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서식 4>

제 17조 【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18조 【임원선거】

- ① 이사 및 감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은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 ⑤ 서면총회 시 임원등록이 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형위원회가 이사회 후보 중에서 이사장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9조 【대의원 선거】

- ①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2조에 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 ② 대의원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따라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20조 【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① 조합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 ②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 21조 【대의원의 선출시기】

-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정관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22조 【투표용지 및 투표방법】

- ①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 ② 직접투표, 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로 한다.

제 23조 【투표 및 개표관리】

-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24조 【개표】

-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 25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 26조 【당선인의 결정】

- ① 임원선거는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③ 대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사자를 정하고 선출인원보다 적거나 같게 등록된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 27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28조 【임기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일부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상근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상근임원의 정의】** 상근임원이라함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사를 말한다.

제4조 **【직원급여와의 구분】** 상근임원의 급여는 직원의 급여와 달리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급여의 결정】**

1. 상근임원의 급여는 매년 사업 및 경영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상근임원의 급여는 연봉으로 책정하고 매월 급여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상근임원의 급여 기산일은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한다.
2. 상근임원의 급여 지급일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급여일로 한다.

제7조 **【업무추진비 지급】**

1. 상근 또는 비상근임원의 조합 업무에 관련된 실제비용을 업무추진비라 정의한다.
2. 상근 또는 비상근임원의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보수 지급외 별도의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8조 **【활동에 따른 수당】** 임원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4. 18제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1. 조합의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지역사회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노동자대표
4.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간사 : 본 조합의 직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개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습득한 대외비가 표시된 문건 등 조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12.17. 제정)

사회적가치성과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조합의 사회적가치지표 관리규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사회적목적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1. 사회성과 관리
2. 지속가능성과관리
3. 사회적 활동성과 관리
4. 사회적가치관리
5. 조합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사회적가치 지표 관리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사회적가치성과 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노동자대표
4.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간사 : 본 조합의 직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1.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습득한 대외비가 표시된 문건 등 조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12.17.제정)

상벌규정

제정 202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직원의 사기진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제7장(포상및징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별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별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별위원회】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상별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별위원회개최 품의시 이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재 심】 상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이의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포상

제8조【포 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거나, 조합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근속상
2. 공로상(모범직원)
3. 기타 상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确定的한 상

② 포상 수혜자 처우

1. 근속상: 5년단위 포상금 500,000원&5일휴가
2. 공로상(모범직원) : 그에 합당한 포상
3. 기타 상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이사장이确定的한 포상

제10조【포상기준】 제8조에 의한 포상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① 포상의 기준

1. 근속상은 5년 이상 근속하여 성실히 근무한 자로 이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행함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 한 직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4. 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조합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직원
5. 업무수행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직원
6. 사회적인 공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향상시킨 직원
7. 재해 및 그밖의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현저할 경우
8.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의 공로가 뚜렷한 경우
9. 기타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② 포상의 제한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직원

제3장 징계

제11조【징계기준】 직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장애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조합에 손해를 초래한 자
4.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5.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6.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취업규칙 제76조에 준하는 행위)
7.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조합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
8. 불친절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제기된 자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제13조【해고】 해고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고 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취업규칙 제50조 각호에 규정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조합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자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은폐 또는 사칭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8. 정신이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자

제14조【정직】 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 면직된다.

1.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직원
2.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직원
3. 정직기간중 정년에 이르는 직원

제15조【감봉】 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감봉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견책과 경고】 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 또는 실책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② 경고는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 경고 3회차 받을 시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와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상벌위원회규정

제정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포상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상벌규정에 정하는 포상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직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의 원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위원은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사】 위원장은 포상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 ①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간 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관】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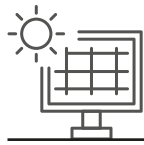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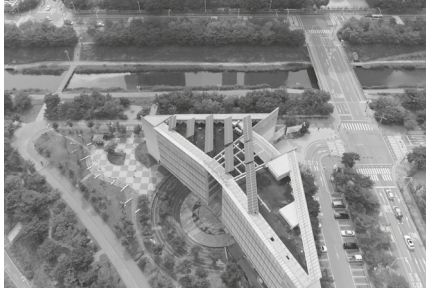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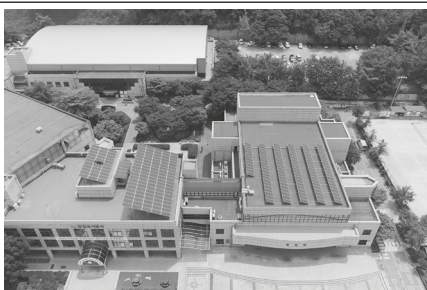
대의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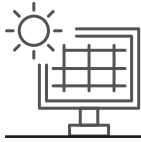
□ 제4기 대의원명단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순번	성명	조합원번호
1	강한식	14344	36	박정열	23019	71	이종숙	23020
2	경창수	12111	37	박종식	19176	72	이채목	19183
3	고상윤	15507	38	박혜원	21010	73	이태성	13230
4	고선영	17847	39	배현정	14347	74	이희경	14335
5	공경빈	20029	40	백보람	19122	75	임병웅	18109
6	김귀정	12069	41	백영채	22172	76	임윤희	21079
7	김기영	13212	42	설성심	15654	77	장기	22100
8	김미숙	15570	43	설점순	15352	78	장영숙	14324
9	김선기	15582	44	송미경	13173	79	장영순	13170
10	김성환	12024	45	송승엽	23044	80	전선아	12042
11	김세영	13043	46	송승철	23045	81	전순재	15470
12	김송미	22029	47	송재임	17858	82	전영자	13202
13	김수경	22179	48	신남균	13266	83	정광식	15551
14	김영경	22101	49	신선주	21132	84	정대호	15456
15	김영림	19082	50	신윤관	14338	85	정상숙	17859
16	김옥수	20030	51	양성습	15552	86	정연주	15583
17	김용기	15504	52	오성	15374	87	정은철	23076
18	김인숙	20116	53	오수산나	20069	88	정준위	15416
19	김진선	13251	54	오은석	15574	89	정진명	15455
20	김진희	15665	55	오정숙	19050	90	정찬명	21150
21	김초환	12033	56	오혜란	21007	91	조영주	18106
22	김현주	21056	57	유순관	12005	92	주영덕	12018
23	김혜영	17862	58	유연	18131	93	채명숙	16758
24	김활신	12039	59	유용근	23009	94	최병귀	15475
25	김희대	15376	60	유철호	23058	95	최부월	16759
26	나현	22102	61	윤여길	20133	96	최영미	20066
27	노시구	13265	62	윤유진	22042	97	최영숙	13189
28	라은영	20021	63	윤춘혜	23016	98	최현수	17849
29	문종득	23112	64	이경기	12133	99	하용녀	12093
30	민복숙	18042	65	이경원	22048	100	한미영	12107
31	박귀현	20085	66	이성미	19118	101	한상운	14306
32	박범수	22121	67	이송란	22004	102	한정록	15371
33	박병육	19169	68	이옥희	16790	103	홍정덕	12121
34	박영준	17872	69	이용진	12119	104	홍지인	17838
35	박은희	21117	70	이용호	15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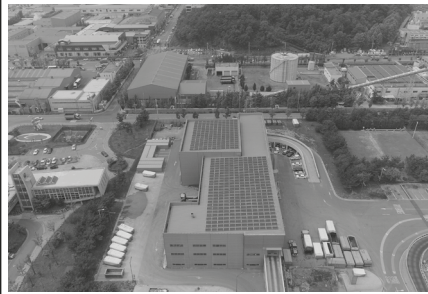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소

		
1호 중앙도서관 발전소	2호 호수동주민 발전소	3호 상록수체육관 발전소
		
3호 상록수체육관 발전소2	4호 와스타디움 발전소	5호 재활용선별센터 발전소
		
6호 올림픽기념관 발전소	7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발전소	8호 반월배수지 발전소
		
9호 감골시민홀 발전소	10호 와동체육관 발전소	11호 청소년수련관 발전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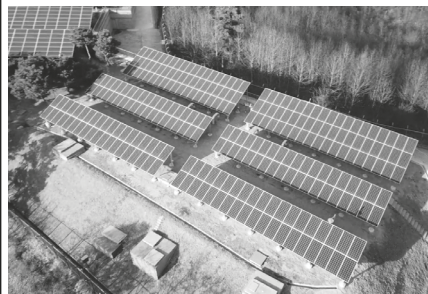
12호 생활폐기물선별장 발전소



14호 와동배드민턴장 발전소



15호 차량등록사업소 발전소



16호 반월배수지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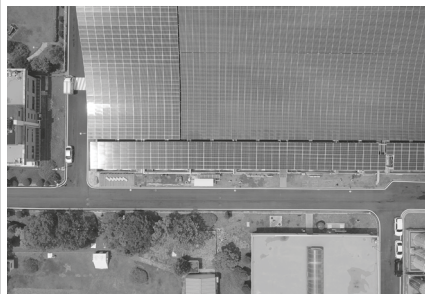
17호 일동배수지 발전소



18호 안산게이트볼장 발전소



19호 안산정수장 발전소



20호 안산정수장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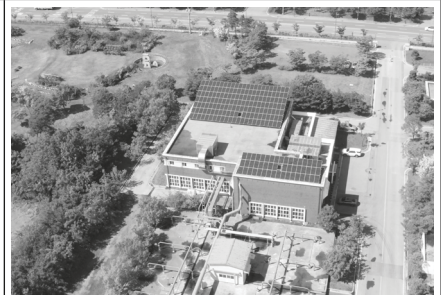
20-1호 안산정수장 발전소



21호 선부다목적체육관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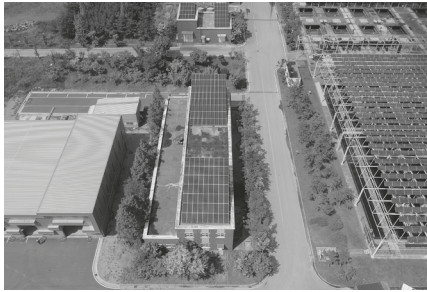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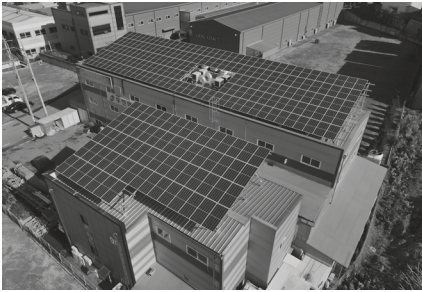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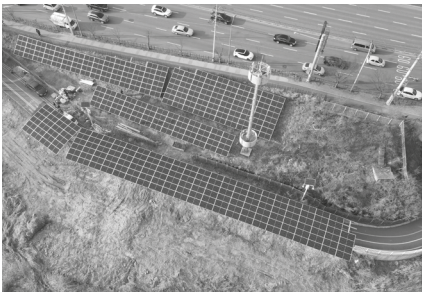


22호 점심체육관 발전소



23호 하수처리장 발전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소

		
24호 하수처리장 발전소	25호 안산공장 발전소	26~29호 공단3주차장 발전소
		
30~32호 공단1주차장 발전소	33~37, 42~44호 시화호수로 발전소	35~37호 자전거 도로
		
42~44호 자전거 도로 사면	50호 안산정수장	55호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발전소
		
56호 안산시민햇빛 방축리발전소	안산시민씨에스텍발전소	안산시민햇빛 대부도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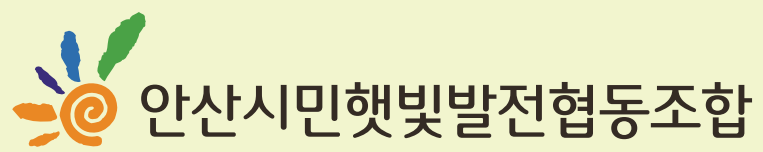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시민들의 희망공동체"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304-1호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 전 화 : 031-483-3428
- F A X : 031-483-3429
- E-mail : ansan_energy@ansansolar.kr
- 홈페이지 : <http://ansansolar.kr>

출 자 계 좌 : 신협 131-015-613977

예 금 주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